



# COP28 UAE

COP28 결과 공유 및 대응전략



## 파리협정 6조의 협상결과 및 시사점

**이충국** 센터장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

COP28 결과공유 및 대응전략

# 파리협정 6조 협상결과 및 시사점

2023.12.19

이충국 센터장 / 한국기후변화연구원

- 탄소배출권센터장(수석연구위원)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문위원회 전문위원
- 세종대학교 겸임교수
- 산림청·통일부 정책자문위원
- UNFCCC CDM Verifier
- 산림청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위원

# CHAPTER 1

## 파리협정과 시장메카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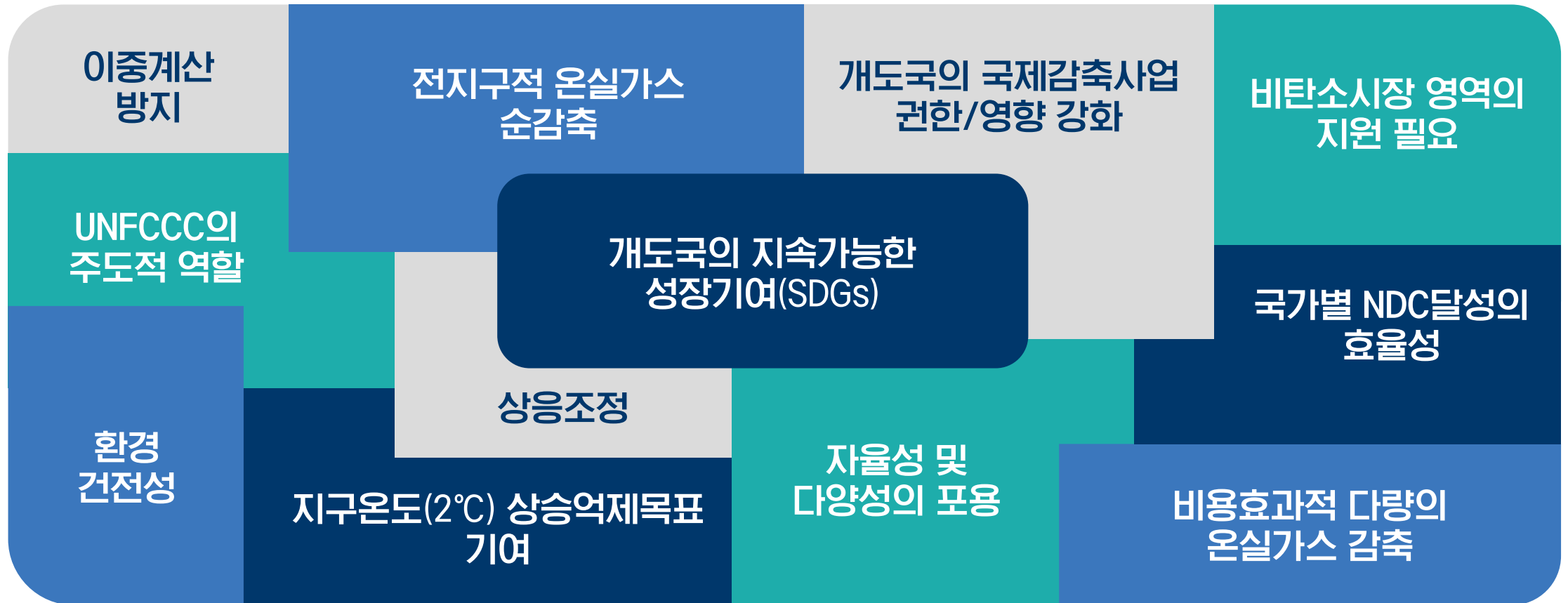
---

교토의정서에 따라 선진국 중심의 의무감축체제와 유연성 메커니즘의 시행  
**개도국의 실질적 지속가능발전에 기여도가 낮으며 선진국의 경제 패러다임으로만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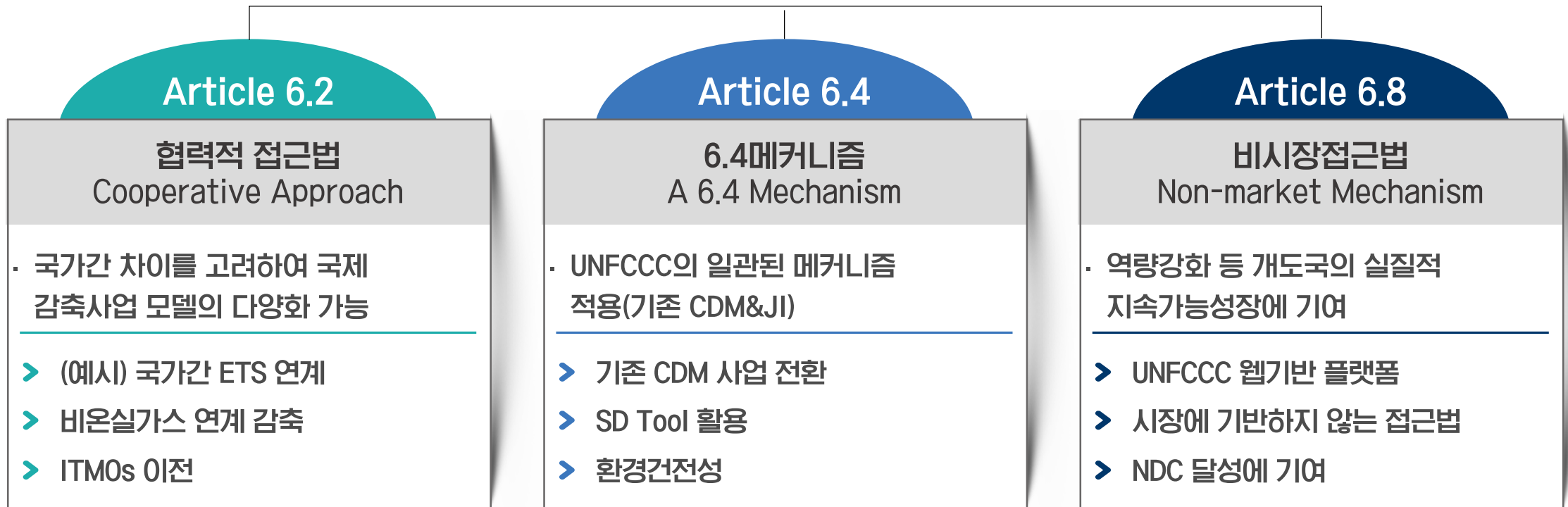
교토메커니즘 추진과정의 장/단점 **학습결과** → 선진국 및 개도국 모두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 증대

선진국 및 개도국 그리고 UNFCCC 등 각각의 추구하는 핵심가치 다양  
**개도국의 권한 및 지속가능성 강화, 선진국의 다양성, 전지구적 순감축 등이 핵심가치**



파리협정 제6조는 총 9개의 항으로 구성, 제6.2/6.4조에 대한 이행규칙 COP26에서 제정  
**국가별 다양한 Needs를 고려한 파리협정 6.2/6.4/6.8조의 메커니즘으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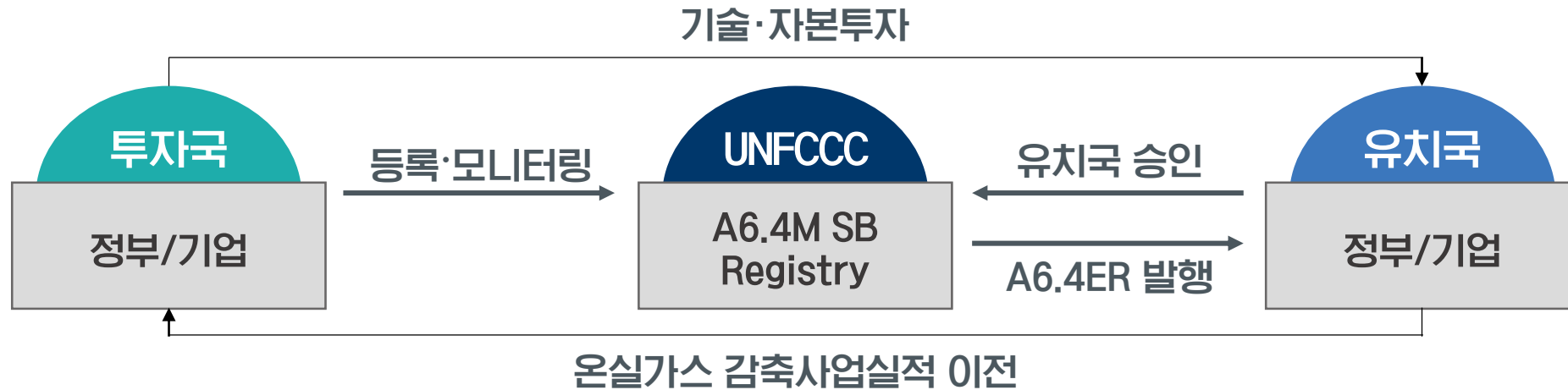
## Article 6.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제 탄소시장



당사국간 다양한 협력방식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감축(ETS연계, 비온실가스감축, 상쇄제도 운영 등) **발생된 감축실적의 이전(ITMO)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제온실가스감축 등에 활용**



UNFCCC 주도의 사업승인/감축량(A6.4ER) 인증 (기존 CDM 체제와 유사)  
**환경건정성 및 유치국 지속가능한 발전, 이중사용금지 등으로 전지구적 온실가스 순감축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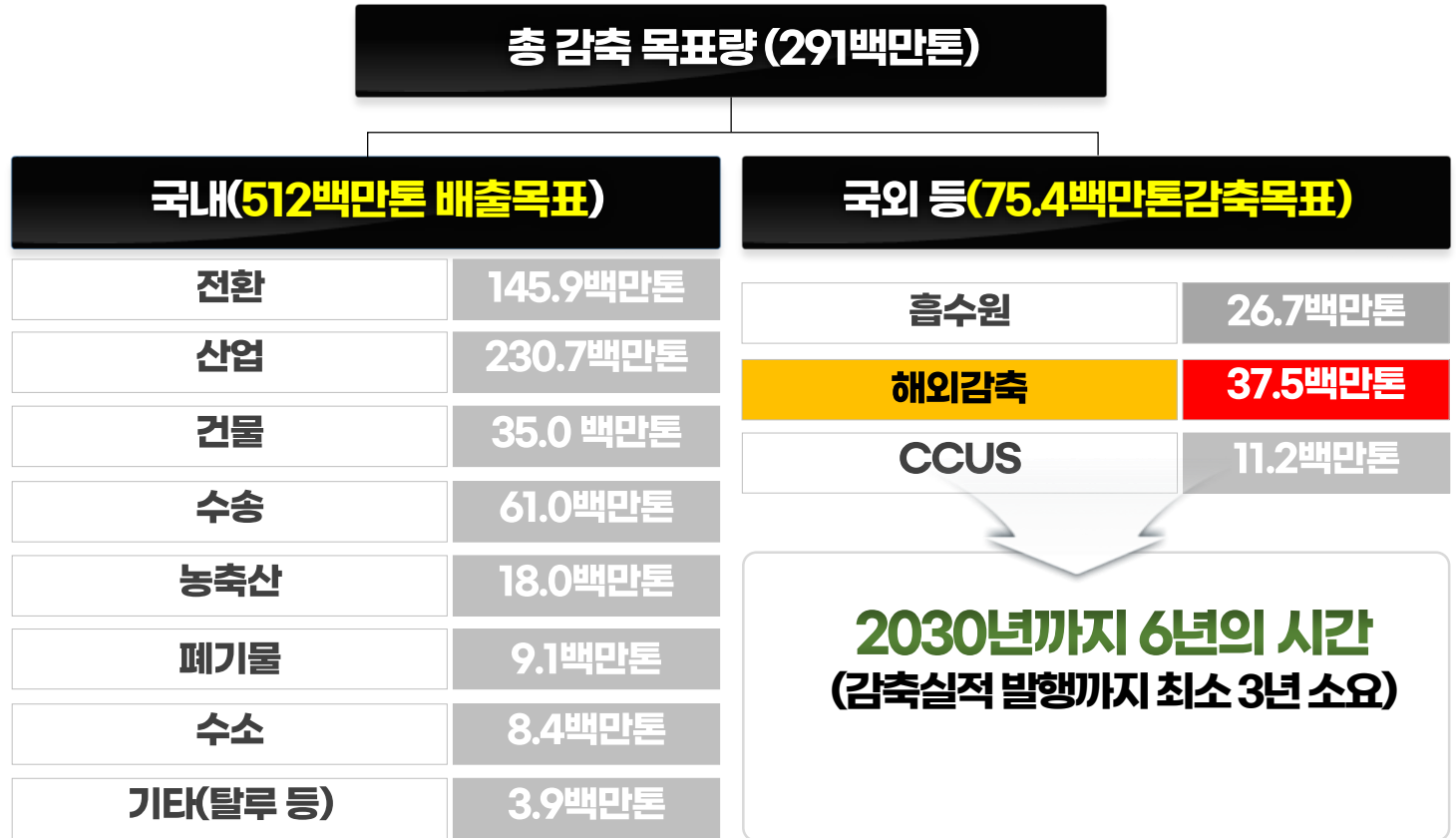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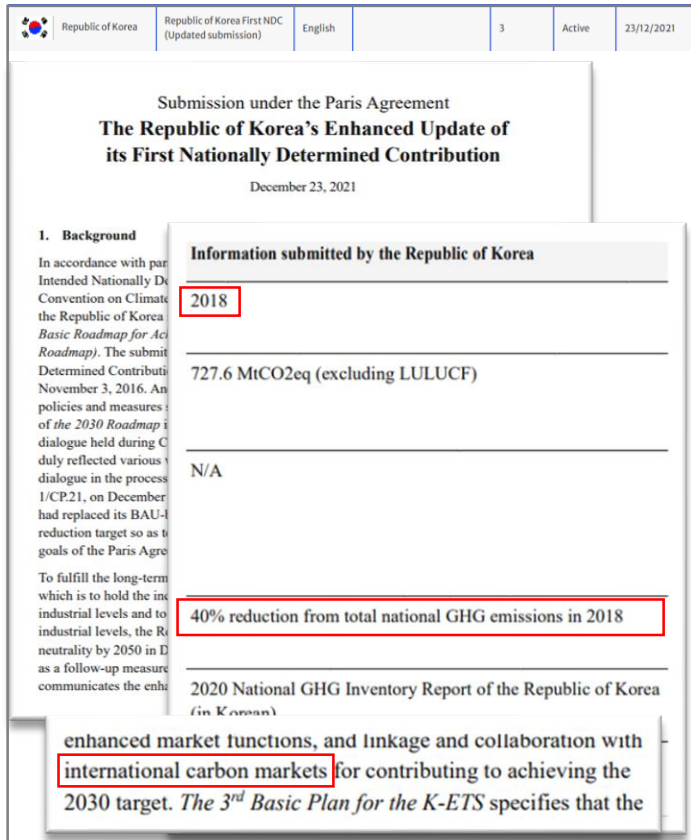


##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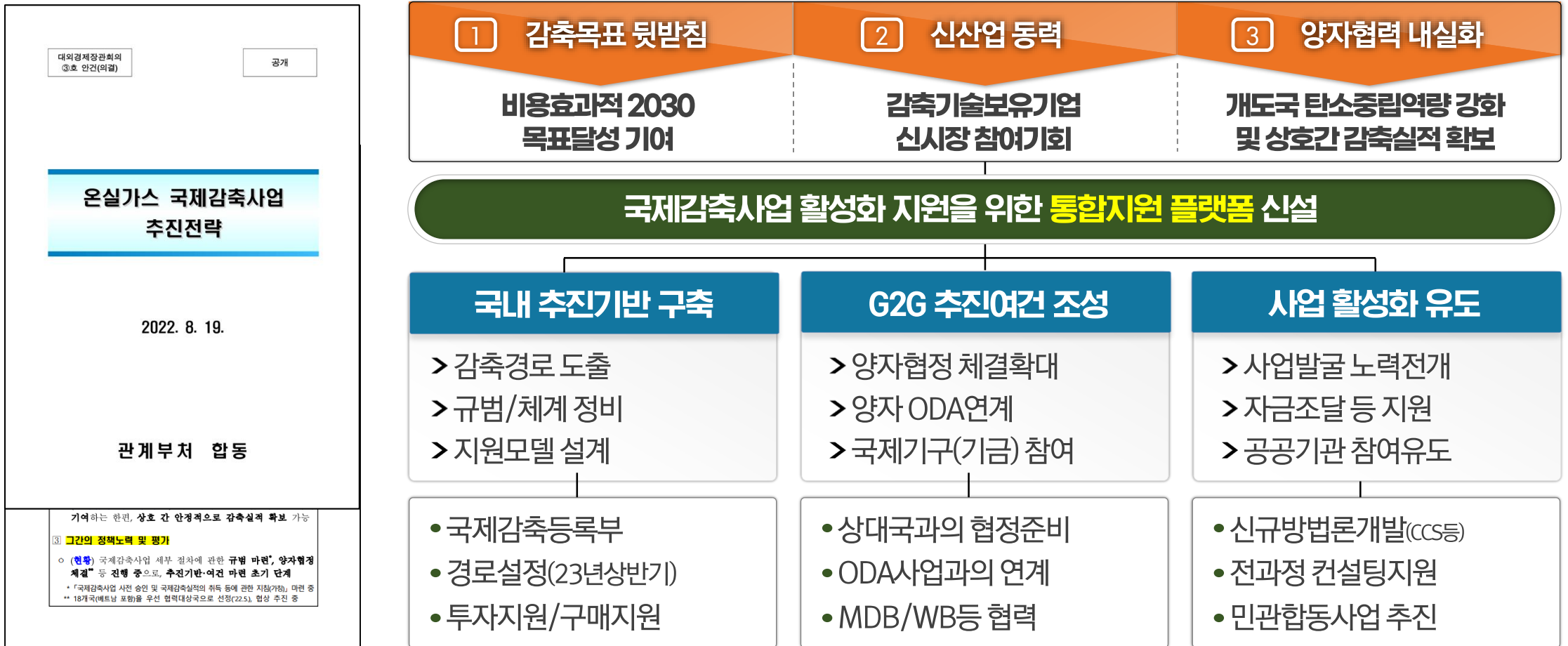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2016년 이후 3차에 걸쳐 NDC 제출 -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4.367억톤) → 2030년 2.91억톤 감축필요**



## 2022.8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심의의결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 전략 국제감축사업 :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후 감축실적을 이전 받아 국가감축목표 달성에 활용



기여하는 한편, 상호 간 안정적으로 감축실적 확보 가능

③ **그간의 정책노력 및 평가**

- (현황) 국제감축사업 세부 절차에 관한 '규범 마련', '양자협정 체결' 등 진행 중으로, 추진기반·여건 마련 초기 단계
- 「국제감축사업 사전 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가장)」 마련 중
- \*\* 18개국(에트남 포함)을 우선 협력대상국으로 선정(22.5). 협상 추진 중

# CHAPTER 2

## 파리협정 6조 협상결과

---

협상의 주요 주체별 파리협정 6조에 대한 이해관계 상이  
**특정 항목에 대한 세부 이슈가 아닌 총론적 문제제기로 협상 미완료**

서로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누구도 급하지 않았던 협상

### 유럽연합 & 미국

- > NDC에 ITMO 활용계획 없음
- > EU-ETS 상쇄 불인정



- 환경적 건전성 확보 강화 필요
- 보다 강화된 규범 적용 필요

###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독립연합(AILAC), 군소도서국가동맹(AOSIS)

- > 탄소시장 메카니즘 불인정
- > 개도국의 지속가능성 우선



- 원주민 권리증진 대책 마련 필요
- 인권보호 등 방안 마련 필요

### 일부 개도국

- > 기금 등 6.8조에 대한 관심
- > 6.2조 시행 준비시간 필요



- 6.8조의 조속한 이행 필요
- 선진국의 적극적 지원 필요

☑ SB(Supervisory Body)는 SD TOOL을 CMA5에 공식안건으로 제출하지 않음

국제 탄소시장 관련 기구 및 단체 중심으로 6조의 미채택에 대한 유감표명 다수  
국제감축사업의 활성화 저해와 지연으로 탄소시장의 긍정적 효과 우려 표명

IETA  
Dirk Forrister



6.4조 메커니즘 지연은 환경적 건전성이 아닌 반 시장 의제(anti-market agenda)의 승리"라며 유감표명

ECOSYSTEMS  
Michael Jenkin



미국 대표단이 유럽연합(EU) 등이 제6.2조에 이전에 합의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정을 적용하려고 했으며 불만 표시

BeZero Carbon  
Tommy Ricketts



제6.2조와 제6.4조가 채택되지 않은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 "자본을 유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에 합의를 했어야 했다"

ICVCM  
Amy Merrill



매우 유감이며, ICVCM의 활동은 무결성이 높은 탄소배출권을 좀 더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계속될 것이다

## 국제감축실적을 사용하지 않을 선진국(EU & 미국)에서 환경건정성 등에 대한 우려 엄격한 절차, 방법론 기준, 투명한 검토, 정보보호 등 다수의 이슈발생

### 6.2조의 거버넌스 체계

- EU : UN의 관리
- 미국 : 국가별 관리

### ITMO허가의 철회

- 특정상황에서의 일방적취소
- 엄격한 철회기준 마련

### 6.2조의 SOP/OMGE 등

- 6.2조 사업에 대한 적응기금적용
- 자발적 사항

### ITMO TER절차 및 반영 평가과정의 비밀정보 보호

#### Decision -/CMA.4

#### Matters relating to cooperative approaches referred to in Article 6, paragraph 2, of the Paris Agreement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Recalling* Article 6, paragraph 1, of the Paris Agreement, Parties recognize that some Parties choose to pursue voluntary coopera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Partie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to allow for higher ambition in their mitigation and adaptation actions and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integrity,

*Also recalling* decision 2/CMA.3 and its annex,

*Further recalling* decision 1/CP.24, paragraph 43(a), according to which Parties may submit their national communication and biennial transparency report as a single report in accordance with the modalities, procedures and guidelines for the transparency framework for action and support referred to in Article 13 of the Paris Agreement,<sup>1</sup>

1. *Adopts:*

(a) The guidance relating to decision 2/CMA.3, annex, chapter VI.A (Tracking), as contained in annex I;

(b) The guidelines for the Article 6 technical expert review referred to in decision 2/CMA.3, annex, chapter V (Review), as contained in annex II;

(c) The outline for the Article 6 technical expert review referred to in decision 2/CMA.3, annex, chapter V (Review), paragraph 27, as contained in annex III;

(d) The training programme for technical experts participating in the Article 6 technical expert review referred to in decision 2/CMA.3, annex, chapter V (Review), as contained in annex IV;

(e) The outline for the initial report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itial report) and updated initial report referred to in decision 2/CMA.3, annex, chapter IV (Reporting), as contained in annex V;

(f) The outline for annex 4 (Information in relation to the Party's participation in cooperative approaches, as applicable) to the biennial transparency report referred to in decision 2/CMA.3, annex, chapter IV.C (Regular information), as contained in annex VI;

2. *Encourages* Parties to test the draft version of the agreed electronic format contained in annex VII and to provide feedback via the submission portal<sup>2</sup> by 30 April 2023;

3. *Requests* the secretariat to organize a hybrid workshop on the draft version of the agreed electronic format referred to in paragraph 2 above at least one month prior to the fifty-eighth session of the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June 2023);

#### DRAFT TEXT on

CMA 5 agenda item 14(a)  
Guidance on cooperative approaches referred to in Article 6, paragraph 2, of the Paris Agreement and in decision 2/CMA.3  
Version 12/12/2023 19:30

#### Draft decision -/CMA.5

#### Matters relating to cooperative approaches referred to in Article 6, paragraph 2, of the Paris Agreement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Recalling* decision 2/CMA.3 and its annex,

*Also recalling* decision 6/CMA.4 and its annexes,

#### I. Process for managing common nomenclatures

1. *Requests* the secretariat to establish common nomenclatures for all specific information attributes pertaining to cooperative approaches referred to in Article 6, paragraph 2, of the Paris Agreement, taking into account existing decision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and pursuant to decision 6/CMA.4, paragraph 17(j);

2. *Also requests* the secretariat, as the administrator of the centralized accounting and reporting platform, to develop an inclusive process for requesting the establishment of and changes to common nomenclatures, pursuant to decision 6/CMA.4, annex I, paragraphs 29–30;

3. *Invites* Parties to submit their views on and proposals for the process set out in paragraph 2 above, in accordance with decision 6/CMA.4, annex 1, paragraph 29;

4. *Requests* the secretariat to develop an initial list of common nomenclatures and maintain these common nomenclatures in consultation with the voluntary forum of Article 6 registry system administrators and technical experts of participating Parties ;

5. *Notes* that the secretariat, as the administrator of the CARP, will assign a unique identifier using the naming convention "CA{NNNN}" to each cooperative approach sequentially in order of submission to the CARP of each initial report or updated initial report in respect of a new cooperative approach;

6. *Also notes* that the secretariat, as the administrator of the CARP, will assign the identifier "CA0001" to the mechanism established by Article 6, paragraph 4, of the Paris Agreement, in respect of authorized A6.4 ERs, or where participating Parties or Party requests the assignment of a different cooperative approach unique identifier;

UNFCCC CMA5의 미채택에 따른 우리나라의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방향성 제고 필요  
**핵심 이슈인 환경건전성, 방법론,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국제감축사업 영향 고려**

### 6.2조 기반의 국제감축사업 추진 방향성

- > 6.4조 모델과의 차별성
- > 민간의 소규모사업과의 경쟁
- > 다량의 ITMO 확보필요
- > 구매전략에 대한 논의필요
- > 현재 지원중 사업에 대한 전략

- 대형 국가프로젝트 중심으로 상대국과 감축실적 이전 협정을 체결하고 6.2조 기반감축사업 추진
- 해당 협력사업에 대해 ODA등 지원사업 총력 연계 추진

### 글로벌 개도국 들의 국제감축사업 추진의 다양한 모델 수용성

- > 자국 상쇄제도를 통한 인증
- > 6.4조 메커니즘을 적용
- > VCS와 GS 등 제도연계
- > TAX 체계 적용
- > 자국내 재투자 등 기준

- 감축사업 승인 및 실적 인증 전 과정에 대해서 상대국과 협력하여 결정한다로 지침 간소화 필요
- 감축실적에 대해서 IKOC로 전환해주는 간소화된 절차 마련필요

### 파리협정6조에서 강화된 지속가능성 기준 적용

- > SD TOOL 적용 - A6.4M
- > SD의 중요성 강화
- > 국내 지침 미반영
- > 평가체계 등 미비
- > 향후 실적의 국제신뢰성

- 감축사업에 대하여 사업 승인 과정 중에 SD에 대한 기준을 명시 - SD기준에 대해서 정립필요
- 국제 감축사업에 대해서 CMA 등 결정사항 등에 대한 지침 반영

		sb 005	sb 006	sb 007	sb 008	sb 009
1	<b>Activities involving removals under the Article 6.4 mechanism - 제6.4조 메커니즘에 따른 제거와 관련된 활동</b>			draft recommendation ver 2	draft recommendation ver 4.1	<b>Recommendation ver 1.1</b>
2	<b>Appeal &amp; grievance processes under the Article 6.4 mechanism - 제6.4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고충처리 절차</b>				<b>Draft Procedure</b>	
3	<b>Article 6.4 accreditation 제6.4조 메커니즘 인증</b>			Draft Standard (Ver 2)	<b>Standard</b>	
4	<b>Article 6.4 activity cycle procedure for projects 제6.4조 프로젝트의 활동 주기 절차</b>		Draft Procedure (Ver 3)		<b>Procedure (ver 1)</b>	
5	<b>Article 6.4 activity standard for projects 제6.4조 사업의 활동기준</b>			Draft Standard (Ver 3)	<b>Standard (Ver 1)</b>	
6	<b>Article 6.4 sustainable development tool 제6.4조 지속가능발전 도구</b>				<b>Draft Tool (Ver 2)</b>	
7	<b>Article 6.4 validation and verification standard for projects - 제6.4조 사업의 타당성 및 검증기준</b>			Draft Standard (Ver 2)	<b>Standard (Ver 1)</b>	
8	<b>Procedure for the transition of CDM activities to the Article 6.4 - CDM 활동을 제6.4조 메커니즘으로 전환하는 절차</b>	Procedure (Ver 1)				
9	<b>Requirements for the development and assessment of Article 6.4 mechanism methodologies 제6.4조 메커니즘 방법론의 개발 및 평가를 위한 요건</b>			Draft Recommendation (ver 7)	Draft Recommendation (ver 9.1)	<b>Recommendation</b>
10	<b>Standard for the transition of CDM activities to the Article 6.4 - CDM 활동의 제6.4조 메커니즘으로의 이행 기준</b>		<b>Standard (ver 1)</b>			
11	<b>Transition of CDM activities to the Article 6.4 CDM 활동의 6.4조 메커니즘으로의 전환</b>				<b>Standard</b>	



## Olga Gassan-zade

### Chair A6.4

**2023. 11. 17**

**WE DID IT!**

Both the methodological guidance and the recommendations on removals are approved and forwarded to CMA.



**2023. 12. 12**

It's official. Ward No.6 Guards, Fences, Circus.

ARTICLE 6.4 MECHANISM

A6.4-SB009-A01

#### Recommendation

Requirements for the development and assessment of Article 6.4 mechanism methodologies

Version 01.1

**FAIL**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RTICLE 6.4 MECHANISM

A6.4-SB009-A02

#### Recomme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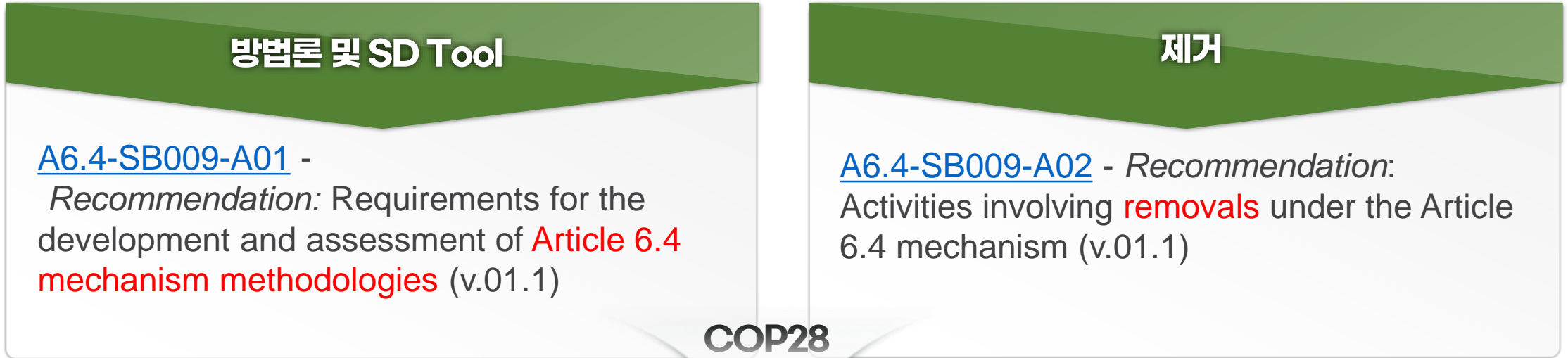
Activities involving removals under the Article 6.4 mechanism

Version: 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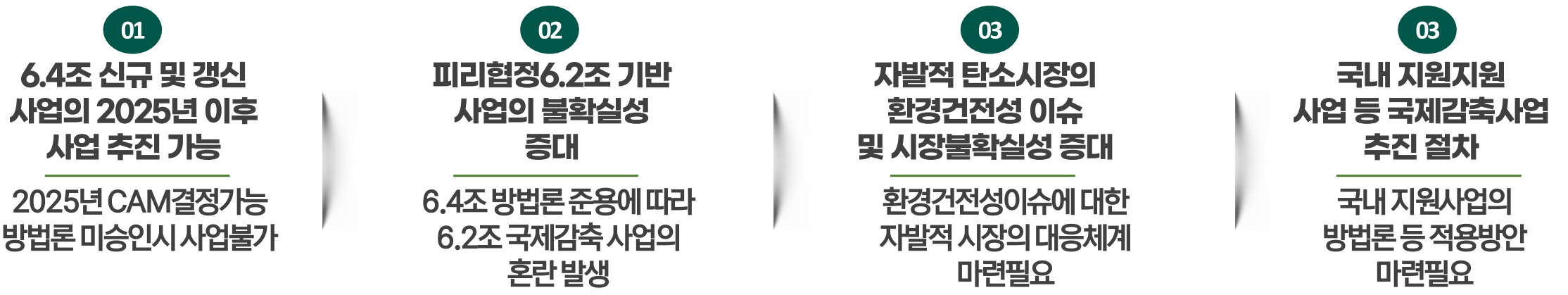
**FAIL**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합의 불가로 인한 6.6조 기반 프로젝트의 불확실성 및 탄소시장 영향



6.4조 사업으로의 온실가스 제거 등 환경건전성에 대한 우려증대  
세부적 기준 항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없이 큰 틀의 우려로 진전된 협상 미추진

### AR CDM 전환

- AR CDM의 SDM 전환 신청은 2024년 06월 30일까지 수행

### 적응기금 면제

- 최빈국 6.4사업은 개도국 적응기금(5%) 면제

### 방법론 권고안 승인

- 방법론 개발 및 평가지침의 CMA 승인

### 탄소제거 기준 승인

- 온실가스 제거사업 기준의 CMA 승인

## 파리협정 6.4조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 및 REDD+ 사업 등의 환경건성정 우려로 협상 실패

6.4조 12th DEC 19:30 Version

- 배출회피 및 보존강화 사업(ex. Redd+) 사업의 6.4조 적용은 2028년(COP33)에 논의

### 배출회피 및 보존강화사업

- 6.4 등록부 관리자는 최초 발행되는 시점에 6.4ER의 자격(NDC, OIMP, etc.)을 지정, 유치국은 최초 6.4ER 발행 전에 허가조건 제출 권장

### A6.4ER의 활용성 지정권한

- SBSTA에게 6.4감독기구(SB)와 유치국의 책임에 대한 추가 사항을 검토해서 2028년(COP33)에 권고안을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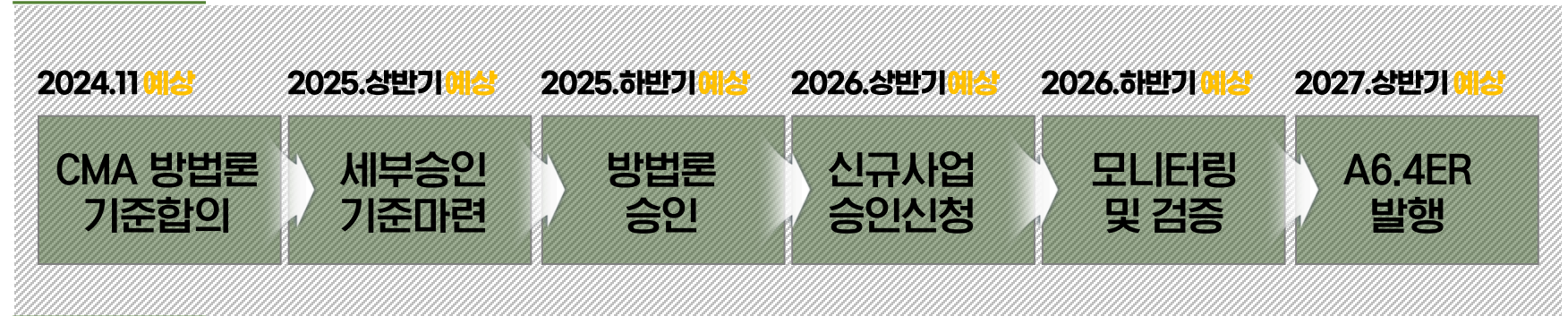
### SB와 유치국의 책임

### 기타

6.4조 사업의  
방법론

방법론 이슈

- > 모든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승인된 방법론을 적용해서 사업을 추진** 필요
- > **베이스라인 및 추가성 결정** 등 방법론은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의 기준



**2024년  
신규/갱신사업 불가**

- > CDM 전환사업 등록가능
- > 향후 신규사업과 형평성
- > 신규/갱신 모두 불가

**2025년 하반기이후  
신규사업 등록가능**

- > 2024 CMA6 협상완료전망
- > 2025년 방법론기준검토
- > 2025년 방법론 승인 전망

**보수적 기준의  
온실가스 감축량 발생**

- > 베이스라인 변동성
- > 모니터링방법 강화
- > 표준베이스라인 강화

베이스라인의  
강화

##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의 감소

**Decision** -/CMA.3 Rules, modalities and procedures for the mechanism established by Article 6, paragraph 4, of the Paris Agreement

Para. 33. **Mechanism methodologies shall encourage ambition over time**; encourage broad participation; be real, transparent, conservative, credible and below ‘business as usual’; avoid leakage, where applicable; recognize suppressed demand; align with the long-term temperature goal of the Paris Agreement; contribute to the equitable sharing of mitigation benefits between the participating Parties;



A6.4-SB009-A01, **Recommendation** Requirements for the development and assessment of Article 6.4 mechanism methodologies

Para. 18. Mechanism methodologies **shall** contain provisions to ensure that total creditable amount of emission reductions are **progressively reduced to encourage ambition of activities over time**, while taking into account host Party circumstances and creditable amount of emission reductions required to remove barriers to the deployment of technologies as described in paragraph 19 be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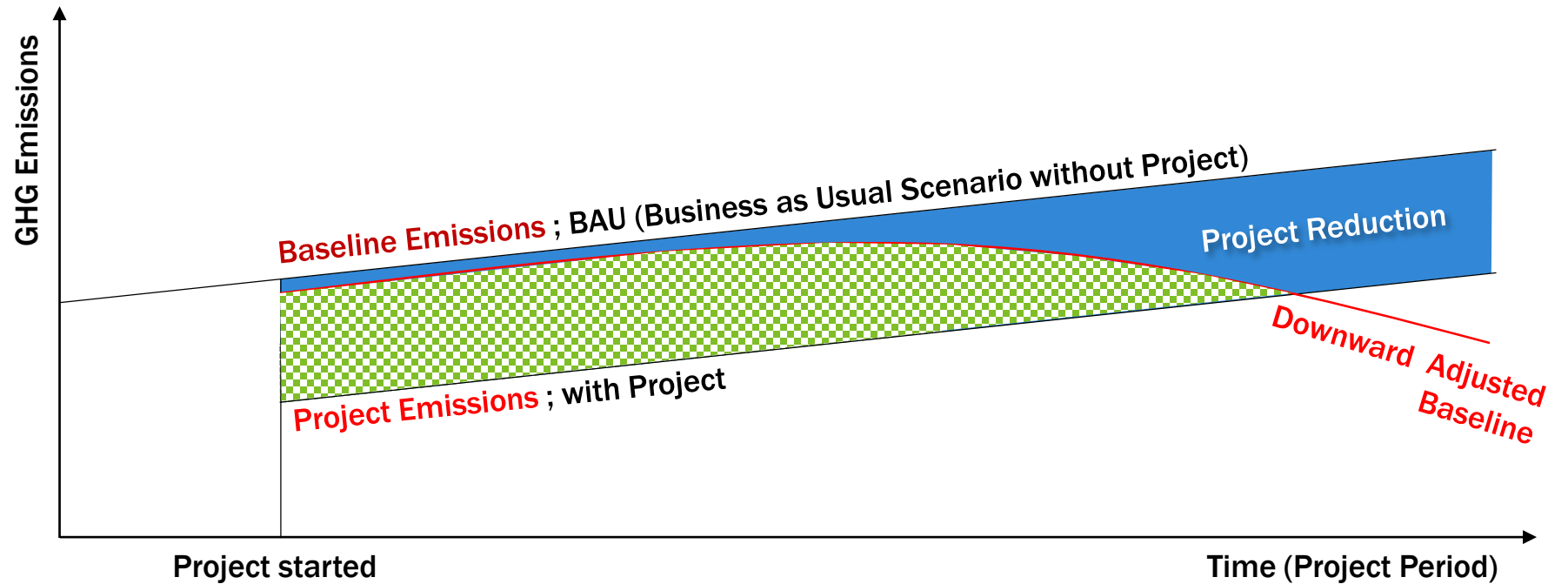


“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베이스라인 배출량의 감소  
온실가스 감축량의 감소 및 사업의 경제성 감소로 사업활성화에 장애요인 ”

베이스라인의  
강화

## 온실가스 감축량의 감소 전망

CDM : 사업 등록 이후 고정 베이스라인 적용 (사업 미변동, 사전베이스라인 적용)  
A6.4M : 사업 등록 이후 일정 팩터를 적용하여 베이스라인의 조정





2026년 이후 신규 또는 갱신의 A6.4M 사업 등록 가능

**2025년까지 민간의 A6.4M 사업에 대한 지원인프라 마련 및 예/본타 중심 사업 지원체계마련**

### 2026년 이후 신규 또는 갱신사업 등록 가능

- > 2026년 이후 사업등록가능
- > 2025년 승인방법론 검토필요
- > ITMO 이전/관리 기준 엄격
- > 환경건정성에 대한 기준 강화
- > 개도국 SD에 대한 기준 강화

2025년까지 A6.2 사업  
위주의 설비설치지원사업  
추진

### 2026년 이후 A6.4M 사업중심 감축사업 활성화 전망

- > 강화된 A6.4M 기준 채택
- > 감축실적의 가치평가 기준
- > 타 제도들의 A6.4M 벤치마킹
- > 민간사업 중심의 활성화 전망
- > 국제사회의 활용성 증대 전망

2026년 A6.4M은  
국제적 탄소감축제도의  
기준으로 정립전망

### 민간사업의 예/본타 사업 위주의 지원체계 마련

- > 방법론 부재
- > 2년간 역량강화 및 기반마련
- > 예/본타 위주의 지원사업추진
- > 2025 승인방법론의 정보공유
- > 지속적인 국제기준 모니터링

국내 민간사업자의  
역량강화와 지원인프라  
마련에 집중



▼  
AGENDA#-

**6.8조**  
**비시장 접근방법을**  
**위한 웹 기반**  
**플랫폼 활성화 요청**

### 6.8조 및 4/CMA.3에 언급된 CMAs 작업 프로그램

> 8/CMA.4 3(a)항 리마인드 요청

#### 8/CMA.4 3(a)

3. 글래스고 비시장 접근법 위원회에 2023-2026년에 대한 결정 4/CMA.3의 부속서 V장에서 언급한 작업 프로그램 활동을 두 단계로 계속 이행할 것을 요청

(a) 결정 4/CMA.3 부속문서 제8항에 언급된 작업 프로그램 활동의 모든 관련 요소를 식별하고 구성하며, 제5항에 언급된 **UNFCCC 웹 기반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둔 제1단계(2023-2024)**;

> 4/CMA.3 Annex V (Work programme activities)에 언급된 활동, 지속적 이행 요청

#### 4/CMA.3 Annex V 8(b)(i)

(i) 사무국의 도움을 받아 도구를 개발하고 구현하며, 작업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된 정보를 포함하여 NMAs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교환하기 위한 UNFCCC 웹 기반 플랫폼을 포함하고, 참여 당사자가 NMAs를 식별, 개발 및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



AGENDA#-

## 6.8조 비시장 접근방법을 위한 웹 기반 플랫폼 활성화 요청

### 비시장적 접근을 위한 UNFCCC 웹 기반 플랫폼

- > UNFCCC 웹 기반 플랫폼 개발 완료 및 완전한 운영을 할 것을 요청
- > 글래스고 비시장 접근 위원회의 제5차 회의(2024년 6월) 이전까지 UNFCCC 웹 기반 플랫폼의 완전운영이 완료되고 제6.8조에 대한 국가별 초점 UNFCCC에 통보 요청
- > 완화, 적응, 재무, 기술 개발 및 관련 협력과 파리협정에 따른 이해 당사자, 관련 기관, 제도적 장치 및 프로세스 관련 8/CMA.4 제8항 상기 요청

### 8/CMA.4 paragraph 8

유엔기구, 다자간, 양자간 및 기타 공공 공여국, 민간 및 비정부기구를 포함한 관련 당사국, 관련 기관, 협약 및 파리 협정에 따른 제도적 장치 및 프로세스를 초청하여 유엔기구, 다자간, 양자간 및 기타 공공 공여국, 그리고 UNFCCC 웹 기반 플랫폼에서 기록을 위한 비시장 접근 방식을 식별, 개발 또는 구현하기 위해 사용 가능하거나 제공되는 금융, 기술 및 역량 강화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

- > UNFCCC에 대한 비시장적 접근방법 정보 제출 및 기록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업데이트할 것 요청



**6.8조**  
**비시장 접근방법을**  
**위한 웹 기반**  
**플랫폼 활성화 요청**

### 비시장적 접근방법

- > 비시장적 접근법을 개발하고 실행할 기회를 4/CMA.3, Annex I - II에서 언급된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을 권장

#### 4/CMA.3 Annex Principle 1: (a), (i) & (b) (i), (iii)

(a) 프레임워크:

- (i)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 퇴치의 맥락에서 당사국의 국가 결정 기여(NDC)의 이행에 있어 비시장 접근방법의 사용과 조정을 촉진

#### 4/CMA.3 Annex Principle 1: (b) (i), (iii)

(a) 프레임워크에 따라 촉진된 비시장 접근방법

- (i) 시장에 기반한 접근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거래나 정상적인 운영을 포함하지 않는 자발적인 협력 행위;
- (iii) 비시장 접근방법 개최국(이하 주최국)의 NDC 이행을 지원하고 파리협정의 장기적 온도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행위;



AGENDA#-

## 6.8조 비시장 접근방법을 위한 웹 기반 플랫폼 활성화 요청

### Glasgow NMAs Committee 5차 회의 이전 일정

- > 2024년 3월 31일 까지 제출 포털을 통해 다음에 대한 의견 및 정보를 제출
  - 스피노프 그룹에 대한 주제
  - 작업 프로그램 활동의 초기 초점 영역에 따른 기존 비시장적 접근법
- > 사무국 요청 사항
  - 위의 제출된 자료에 대한 종합 보고서 작성
  - 파리협정 5.2조의 '공동 완화 및 적응 접근법 및 기타 활동 및 접근법을 포함하여 8/CMA.4, 제10항에 따른 워크숍 보고서 작성

#### 8/CMA.4 paragraph 10

자원의 가용성에 따라 사무국에 참여 당사자가 다음을 통해 비시장적 접근 방식을 식별, 개발 및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청

- (a) 세션 워크숍을 Glasgow 비시장 접근법 위원회의 각 회의와 함께 개최하여 비시장 접근법의 식별, 개발 및 구현에서 얻은 모범 사례와 교훈, 그리고 재정, 기술 및 역량 강화 지원과 이러한 비시장 접근법에 사용 가능한 지원을 필요로 할 수 있는 비시장 접근법에 대한 정보 교환
- (b) 글래스고 비시장 접근법 위원회가 후속 회의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각 워크숍에 대한 보고서 작성;



AGENDA#-

**6.8조**  
**비시장 접근방법을**  
**위한 웹 기반**  
**플랫폼 활성화 요청**

### Glasgow NMAs Committee 5차 회의 구성

- > 2024년 6월 개최 예정인 Glasgow NMAs Commite 5차 회의 중점 사항
  - 작업 프로그램 활동의 초기 초점 영역에 따른 기존 비시장적 접근법
  - 이해 당사자가 제안한 특정 비시장 접근 방식에 대한 개방적인 정보 교환을 촉진하고 협력 기회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 및 원주민 플랫폼의 촉진 작업 그룹 대표를 포함한 원주민 및 지역 커뮤니티 결정 부속서 제8항에 언급된 관련 이해 관계자의 참여
  - 필요한 협업 및 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에 제시된 비시장적 접근을 반영하는 것

# CHAPTER 3

## 결론 및 우리나라의 시사점

---



### NDC의 국제감축실적 활용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 ☑ 국제사회의 RULE 합의가 늦어짐에 따라 전 세계의 파리협정 6조 사업의 단기적 활성화 어려움
  - A6.4M은 2026년 이후 사업등록가능 할 것으로 보여지며, 감축실적 발행은 2027년 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
  - A6.2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상응조정에 대한 개도국의 소극적 대응으로 활성화 어려움



### 국제감축실적 미발행으로 국내 탄소시장의 영향 고려필요

- ☑ 2027년까지 ITMO의 국내 ETS 유입물량 매우 적을 것으로 전망
  - i-KOC의 공급 감소에 따른 탄소시장의 영향 등 고려 필요



### 국제사회의 속도와 발맞춰 장기적 관점에서 국제감축사업 접근 필요

- ☑ 2050년 등 장기적 관점에서 국제감축사업을 접근하고, 국내 차별성 전략과 체계적 준비 체계 구축 필요
  - 사업자의 역량강화, 정부주도의 시범사업 추진으로 모델 정립, 체계적인 국가지원 시스템 구축 등



### 6.2조와 A6.4M의 차별성 정립 필요

- ☑ 6.2조 사업과 A6.4M 사업의 차별성, 정부 지원체계의 차별성 등 정부의 기준 체계 정립 필요
  - 예시) 6.2조 사업은 정부간 대형 협력 사업중심, A6.4M사업은 민간의 불특정 소규모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Q&A

---

KRIC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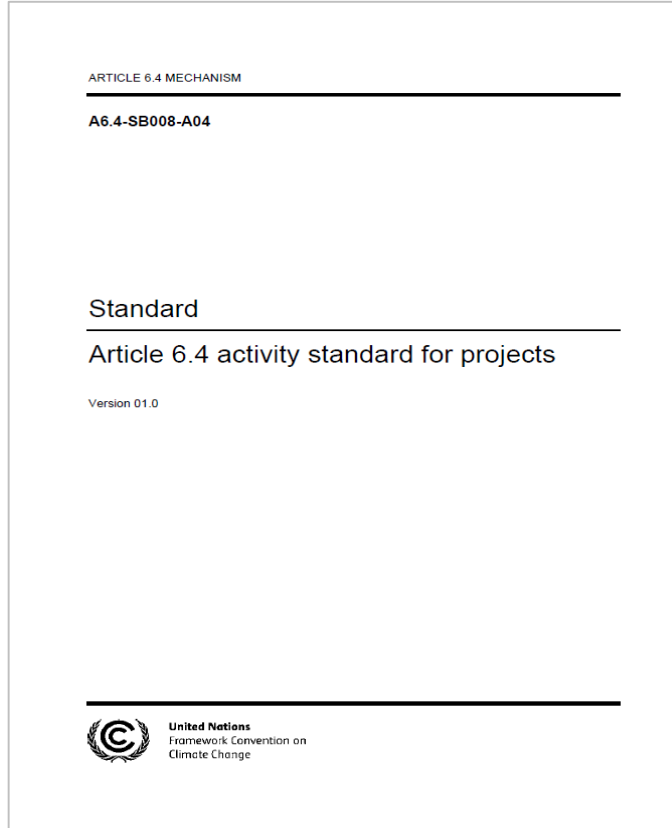


# ANNEX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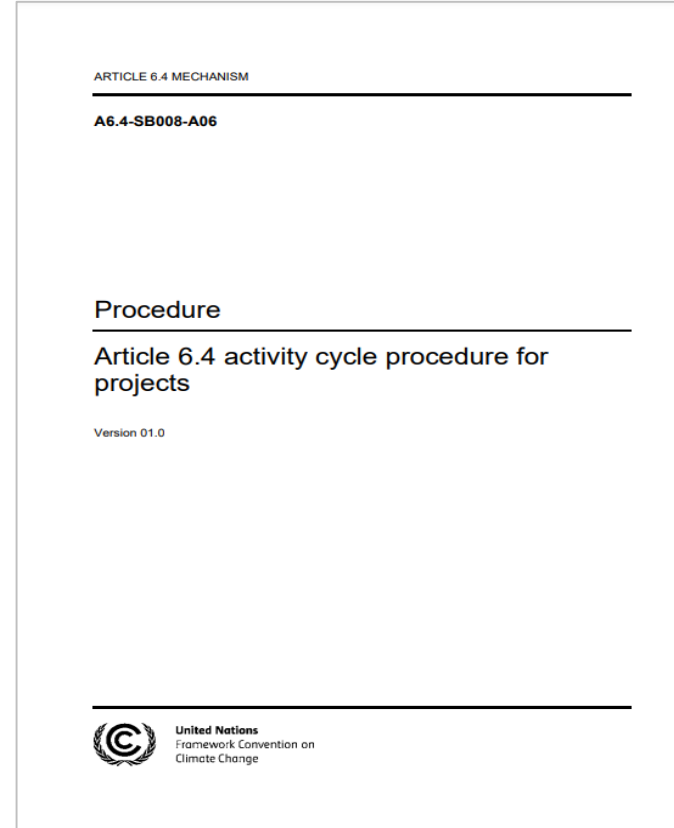
## 파리협정 6.4조 사업의 표준 프로세스

---

# 00 파리협정 6.4조의 절차와 기준



**제6.4조 메커니즘 프로젝트의  
설계, 이행 및 기타 속성과 관련된  
요구사항의 규정**



**제6.4조 메커니즘 프로젝트의  
활동 주기 절차들과 관련된  
모든 절차적 단계 & 요구사항의  
규정**

## SB 회의를 통해 결정된 파리협정 6.4조 프로세스와 해외사업의 프로세스를 결합하여 파리협정 6.4조 기반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표준공정 마련

### 1. 사업 발굴

- 1.1. 아이템 제안
- 1.2. 예비 타당성 조사
- 1.3. 본 타당성 조사



### 2. 사업 기획

- 2.1. 실시설계
- 2.2. 사업 참여자 결정
  - 2.2.1. 사업기획서 작성
  - 2.2.2. 투자자 모집 (MOPA 체결)
  - 2.2.3. 현지 SPC 법인 설립
- 2.3. 사전고려
- 2.4. 글로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2.5. 지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2.5.1. 사업계획서 초안 제출
  - 2.5.2. 이해관계자 의견 제출
- 2.6. 시공업체 계약
  - 2.6.1. 현지 이해관계자 초청 및 의견 수렴
  - 2.6.2. 의견에 대한 요약 보고서 작성

## 2. 사업 기획

2.7. 유치국 승인

2.8. 참여국 승인

2.9. 사업계획서 준비 및 타당성 평가

2.9.1. 사업계획서 완성

2.9.2. 의사소통 방식(MoC) 성명서 준비

2.9.3. 타당성 평가(Validation)

2.10. 사업계획서 등록

## 3. 시공 및 설치운영

3.1. 설계변경 (필요시) - 변경허가 - 중대변경시 사업등록후변경절차(PRC) 수행

3.2. 설비설치업체계약

3.3. 착공신고 및 설치

3.4. 준공검사 및 시운전

3.5. 본 가동

3.6. 모니터링 및 데이터관리, 측정기 검교정관리

## 4. 운영 및 감축실적 발행

- 4.1. 모니터링보고서 작성
- 4.2. 검증
- 4.3. 인증신청
- 4.4. 발행수수료 납부
- 4.5. 발행신청
- 4.6. 계좌 등록

## 5. 감축실적 이전/활용

- 5.1. 감축실적 취득신고
  - 5.1.1. 취득신고
  - 5.1.2. 검토 및 국제감축등록부 등록 및 이력관리
- 5.2. 감축실적 거래
  - 5.2.1. 거래신고(양도/양수)
  - 5.2.2. 검토 및 국제감축등록부 계정 이전
- 5.3. 감축실적 국내외 이전
  - 5.2.1. 이전신청
  - 5.2.2. 검토 및 심의, 이전 그리고 소각

## 6. 국내 ETS 활용(i-koc)



## 7. 국제감축실적 정부활용 및 소각

### 6.1. 사업등록신청

- 6.1.1. 사업등록신청
- 6.1.2. 관장기관 타당성평가
- 6.1.3. 환경부 협의
- 6.1.4. 인증위원회 심의
- 6.1.5. 상쇄등록부 등록

### 6.2. 감축실적 인증신청

- 6.2.1. 감축실적인증신청
- 6.2.2. 관장기관 검증결과 검토
- 6.2.3. 환경부 협의
- 6.2.4. 인증위원회 심의
- 6.2.5. 상쇄등록부 등록 및 i-KOC 발행

### 6.3. 상쇄배출권전환신청

- 6.3.1. KCU 전환신청
- 6.3.2. KCU 전환
- 6.3.3. 탄소시장 매매
- 6.3.4. 배출권거래제 목표달성에 활용

### 7.1. 정부계정으로 국제감축실적 이전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

### 7.2. 국제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한 실적은 소각계정(국제감축실적 등록부)으로 이전

# 00 파리협정 6.4조의 기준과 절차

## 사전 고려

### Prior Consideration : 사전고려

- ▶ 해당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A.6.4M으로 추진할 의사를 밝히는 절차
- ▶ 사업자가 SB 웹사이트를 통해 사업의 기초정보를 간략히 작성하여 통지

- 사업시작일로부터 180일 이내 SB 사무국에 알림(Notification)
- 만약, 사업시작일이 21년 1월 1일~24년 1월 1일 사이의 사업일 경우에 24년 1월 1일로부터 180일 이내(2024년 6월 28일)에 신청 필수

**사업시작일이란** 사업활동과 관련된 주요 설비의 구입,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하기로 약정한 날 또는 **지출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날**, 지출이 발생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이며 토지 구입 및 임대 계약일자 등. 단, 사업을 위한 타당성평가 의뢰 계약은 불인정  
Ex. 주 설비 . 주 설비(ex, 풍력발전 프로젝트의 wind turbine) 구매 계약일  
Ex. 서비스 제공(ex, 고효율 조명의 배포) 계약일

- A6.4M으로부터 제6.4조 메커니즘으로부터의 이익(benefit)이 프로젝트 시행의 의사결정에 필수적이었음을 입증해야 함

**사전고려 포함정보 :** (a) 프로젝트 타이틀, (b) 활동 참여자 이름, (c) 상세 지리적 위치, (d) 적용 기술 또는 조치에 대한 간략한 설명, (e) 적용 제6.4조 메커니즘 방법론 (사전 확인 가능 시), (f) 실제 또는 예정 활동 시작 일, (g) 크레딧 기간 종류(고정 또는 갱신), 예정 시작 일 및 기간, (h) 연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또는 순 온실가스 제거량)

# 00 파리협정 6.4조의 기준과 절차

## 글로벌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Global Stakeholder Consultation

- > 글로벌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공개와 의견수렴 절차
- > UN은 사업계획서를 UNFCCC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28일간 의견수렴

· 활동 참여자는 ① 사전 고려 통지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② 적용가능한 메커니즘 방법론의 활용 가능일로부터 1년 이내 중 더 늦은 날까지 활동 표준(activity standard)에 따라서 작성된 사업계획서(PDD, (A6.4-PDD-FORM)를 사무국에 제출

이해관계자 등은 사업계획서 게시일로부터 28일 이내 UNFCCC 웹사이트 전용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안된 A6.4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사무국에 영어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제출 가능

- (a) 제안된 A6.4 프로젝트에 특정
- (b) 제6.4조 메커니즘 규칙 및 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 GSC를 위한 PDD 공개 후, 2년 이내에 인증 유효기간의 시작시점이 설정되어야 함.  
즉, 사업의 이행(implementation)이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 등록 시점에 고려되었던 여건/상황과 실제 감축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의 여건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함



# 00 파리협정 6.4조의 기준과 절차

## 지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Local Stakeholder Consultation

- ▶ 지역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공개와 의견수렴 절차
- ▶ 프로젝트 활동에 영향을 받는 지역대표와 지역당국 대표를 초청하여 진행

· 활동 참여자는 최소한  
 i) 적용가능한 유치국의 규정,  
 ii) 활동 표준 Appendix 2의 내용 및  
 iii) A6.4 SD tool에 의해 요구 되는 추가 요소  
 들에 부합하게 지역(local) 또는 해당되는 경우 하위 국가(subnational)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제안된 A6.4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shall conduct).

- 지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의 범위는 최소한 제안된 A6.4 프로젝트가 미칠 수 있는 잠재적으로 직접적인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포함(shall comprise)해야 함.
- 활동 참여자는 초대장(invitation)이 관련 i) 이해관계자들에게 발송되었고, ii) 그들의 의견(comments)이 접수(invited) 되었다는 증거를 제공 필요(shall)하며, 관련 이해관계자들 중 누구라도 초대받지 않았다면, 적절한 설명(justification)을 제공 필요(shall).

#### 시행기한

- **유치국 규정이 요구하는 시기**까지 지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완료 필요
- 유치국 규정 미존재 시,

(a) 프로젝트 사업 시작일(start date of the project)

(b) 사업계획서(PDD)를 타당성평가를 위해 DOE에 제출한 날

상기 2개 중 빠른 날까지 지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완료 필요입니다. 또한 더불어 외부배포 및 활용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00 파리협정 6.4조의 기준과 절차

- 지역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기한 관련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프로젝트의 경우, 활동 참여자는 사안별(case-by-case basis) 검토(consideration)를 위해 감독기관에 해당 요건 적용의 면제신청을 접수 가능(may).

- 지역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facilitates), 의견이 제출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보장 가능한 개방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지역 이해관계자를 초청

- ~~지역이해관계자~~ 지역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 필요. 인구의 상당 부분이 문맹인 지역에서는 구두로 제공 필요

활동 참여자는 프로젝트를 지역 이해 관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래의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 설명 필요.

(a) 프로젝트를 단순 & 기술적(non-technical) 용어로 설명하고, 직접적인 긍정 & 부정적 영향에 대한 설명 포함하는 요약 정보;

(b) 프로젝트의 범위(scope), 수명 및 직접적인 긍정 &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정보;

(c) 프로젝트의 환경적, 사회적 영향과 지속가능한 발전에의 효용(benefit)에 대한 분석 요약과 그러한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및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 계획된 해소책;

(d) 프로젝트에 관한 기타 관련 정보;

(e)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comment) 제공 수단

- 지역 및 국가 상황에 적합한 수단을 통해 지역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 지역 이해관계자에게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고, 프로젝트와 그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

- 활동 참여자는 유치국의 국가승인기구(DNA)에 유치국으로 접수된 지역 이해관계자의 의견들의 전달을 요청

## 00 파리협정 6.4조의 기준과 절차

- 지역 및 국가 상황에 적합한 수단을 통해 지역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 지역 이해관계자에게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고, 프로젝트와 그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
- 사업자는 유치국의 국가승인기구(DNA)에 유치국으로 접수된 지역 이해관계자의 의견들의 전달을 요청
- **사업자는** 현지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의견들에 대한 **요약 보고서(summary report)**를 작성
- **사업자는** 지역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검토(consider)해야 하며, 이를 어떻게 고려했는지 PDD에 기술 필요하며, 의견을 미반영시 적절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제시 필요
- 지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완료 후, 의견 수렴 결과가 적절하게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지역 이해관계자는 유치국의 **DNA에 불만(complaint)을 제출** 가능하며, 제출시 DOE는 DNA에 그러한 불만사항의 전달을 요청하고 관련 기준에 따라 타당성평가 중 사업자에게 이를 즉시 전달
- 타당성평가 과정에서 지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 처리에 관하여 유치국 DNA에 제출된 불만 사항이 DOE를 통해 사업자에게 전달될 경우, 사업자는 그러한 불만 사항을 충분히 고려(take due account)하고 DOE가 타당성평가를 완료하기 전에 PDD를 적절하게 수정 필요
- 해당국가 요구사항 + standard Appendix 2 요구사항+ SD TOOL 요구사항
  - ① Appendix 2의 방법론이 주최국의 규칙보다 더 많은 요구사항을 포함할 경우, 사업자는 Appendix 2 준수 필요
  - ② Appendix 2의 방법론과 주최국의 규칙이 양립할 수 없을 경우, 사업자는 어느 한 쪽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해 설명 필요
-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 지속 수렴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채널 운영 필요** (기존 대비 추가 모니터링 요소)

# 00 파리협정 6.4조의 기준과 절차

유치국  
승인

## Host Party Approval

- ▶ 사무국은 사업계획서를 UNFCCC 웹사이트에 공개 후 유치국에 사업계획서 수령을 안내
- ▶ 사무국은 사업계획서 상 기재된 정보를 바탕으로 유치국에 해당 프로젝트 수행이 NDC 달성에 미치는 영향을 요청

· (유치국이 희망하는 경우, 글로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접수되고 공개된 코멘트들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의 공개에 대하여 UNFCCC 웹사이트 전용 인터페이스를 통해 아래의 (a) 또는 (b)로 응답.

(a) DOE의 **긍정적인 타당성평가(validation) 결과 및 감독기구의 승인을 전제로 제6.4조 메커니즘 하에 프로젝트가 등록되는 것을 승인**

(b) 사유를 제시하며 제6.4조 메커니즘 하에 프로젝트가 등록되는 것을 **거절**

### 시행기한

- 유치국은 아래의 기한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공개(publication)에 국가승인기구(DNA)를 통하여 즉시 응답할 것을 권고.
  - i) 사업계획서 공개 통지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 ii) UNFCCC 전용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유치국에 의해 고지되는 더 긴 기한 내(in any longer time frame)
- 응답 전, 유치국은 프로젝트 또는 활동 참여자의 승인 여부를 고려하기 위하여, 제안된 A6.4 프로젝트에 관한 추가 정보의 제공을 국가승인기구를 통하여 사업자에게 요청 가능.

## 00 파리협정 6.4조의 기준과 절차

**유치국의 승인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

- (a) 프로젝트가 유치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한다는 확인 및 방법(how)에 대한 정보
- (b) 유치국이 유치하고자 하는 A6.4 활동의 크레딧 기간이 RMPs 제27(b)항에 따라 갱신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 유치국이 첫 번째 크레딧 기간을 초과하여 프로젝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 크레딧 기간의 잠재적 갱신에 대한 승인
- (c) 프로젝트가 NDC의 이행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그리고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또는 순 온실가스 제거)가 유치국의 NDC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리고 제6.1조에서 언급한 목적에 대한 설명
- (d) **활동 참여자의 승인(Authorization)**  
 사후국은 유치국이 회산 시, 사업자에게 응답 내용을 안내 및 UNFCCC 웹사이트에 응답 내용을 게시해야 함

유치국 이외 A6.4M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당사국들(이하 기타 참여국 (other participating Parties))은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유치국의 응답 게시 이후부터 발행된 A6.4ER을 메커니즘 등록부에 있는 활동 참여자 계정으로 최초 이전하기 전까지 UNFCCC 웹사이트의 전용 인터페이스를 통해 활동 참여자를 승인(shall provide an authorization).**

# 00 파리협정 6.4조의 기준과 절차

## 타당성 평가

### Preparation and Validation of PDD

- > 정해진 사업계획서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
- > 사업자(Project Participants, PP)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DOE의 독립적인 평가로 해당 사업과 관련된 CDM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평가

#### ① 사업계획서(PDD) 준비

- 제안된 A6.4 프로젝트의 활동 참여자는
  - i) 지역(local) 또는 하위 국가(subnational)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시 제출된 의견 및 글로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시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고,
  - ii) 사업계획서 초안에 표시된 동일한 크레딧 기간 유형 및 크레딧 기간 시작일을 적용하여 활동 표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완료.

#### 핵심주의사항

- (a) 사업계획서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내용 반영 필요 (글로벌)!
- (b) 글로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시 공개한 사업계획서 초안과 동일한 크레딧 기간 유형 및 시작일 적용

사업자가 제안된 A6.4 프로젝트에 선택된 메커니즘 방법론에 대하여 deviation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deviation이 허용 가능한지를 관련 절차에 따라 사무국에 확인 요청(request for clarification)을 제출.

## 00 파리협정 6.4조의 기준과 절차

### ② 의사소통 방식(MoC) 성명서

- 제안된 A6.4 프로젝트의 사업자는 감독기구 및 사무국과 정의된 권한 범위 내에서 활동 참여자를 대표하여 의사소통 할 하나 이상의 담당 연락처(Focal Point)를 지정해야 하며, 이 정보를 관련 양식(A6.4M-MOC-FORM)을 사용하여 MoC 성명서에 포함해야 함

프로젝트와 관련한 사업자와 감독기구(또는 사무국) 간의 모든 공식적인 의사소통은 프로젝트 등록 시 제출된 MoC 성명서에 따라 수행. (일부 예외사항 존재)

사업자는 다음 권한들을 담당 연락처(focal point)에 부여

- (a) Scope(a): A6.4ER를 활동 참여자의 개별 계정으로 전달하기 위한 요청과 관련된 의사소통; 및/또는
- (b) Scope(b): MoC 성명서에 대한 변경 사항과 관련된 의사소통; 및/또는
- (c) Scope(c): 위 (a) 또는 (b)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모든 프로젝트 관련 사항에 관한 의사소통

- 사업자는 단독(sole), 공유(shared) 또는 공동(joint) 담당 연락처(focal point)를 권한 범위별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주체를 지정 가능
- 사업자와 담당 연락처(focal point)는 1개의 주(primary) 승인 서명자와 1개의 부(alternative) 승인 서명자를 지정 가능.
- 주 또는 부 승인 서명자의 인증(authentication)은 사업자 또는 담당 연락처(focal point)의 동의 또는 지시를 인증 (authenticating)하는데 충분해야 함.

## 00 파리협정 6.4조의 기준과 절차

- 활동 참여자는 제안된 A6.4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종료일을 MoC 성명서에 자발적으로 표기 가능.
- 사업 참여가 종료된 활동 참여자는 이후에도 언제든지 동일한 사업의 활동 참여자로 포함을 요청 가능.
- 사무국의 프로젝트 등록 요청에 대한 완전성 검사 단계에서 사업계획서와 MoC 성명서 간 연락처 불일치 시에는 MoC에 포함된 연락처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
- 사무국은 MoC 성명서 상 非기밀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

### ③ 타당성평가

- 사업자는 글로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해 게시되었거나 이후 버전의 사업계획서, MoC 성명서 및 모든 관련(supporting) 문서를 해당 **Sectoral Scope을 인정 (accredited)받은 DOE**에 타당성평가(validation)을 위해 제출
- 지정운영기구(DOE)는 활동 참여자가 제출한 문서들에 기술된 정보 및 그 외 추가적으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제안된 A6.4조 프로젝트가 활동 표준 (activity standard) 및 기타 제6.4조 메커니즘 규칙 및 요건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타당성평가 (validation)를 실시.

**지정운영기구(DOE)**는 관련 양식(A6.4M-VAL-FORM)을 활용하여 “Article 6.4 validation and verification standard for projects”에 따라 타당성평가 보고서를 작성.



## 00 파리협정 6.4조의 기준과 절차

### 타당성평가항목

- (a) 최신 양식 사용 여부
- (b) 기술된 정보의 완전성 및 정확성
- (c) 선택된 방법론의 적용기준 충족 여부
- (d) 유효기간 유형 및 기간의 적절성
- (e)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조치사항
- (f) 국가승인서 발급여부
- (g) 해당 국의 지속가능한 개발 기여 여부 등

# 00 파리협정 6.4조의 기준과 절차

## 사업 등록 신청

### Registration of Project

- > DOE가 타당성평가 이후 등록을 UNFCCC 웹사이트에 신청
- > 사업자(Project Participants, PP)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DOE의 독립적인 평가로 해당 사업과 관련된 CDM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평가

#### ① 등록 신청 제출

- 지정운영기구는 사업계획서에 기술된 제안된 A6.4 프로젝트의 활동 표준(activity standard) 및 기타 관련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에 대한 타당성평가(validating)를 실시한 후, 다음의 문서를 첨부하여 등록 신청을 제출;
  - (a) 타당성평가를 완료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supporting) 문서
  - (b) 타당성평가 보고서
  - (c) MoC 성명서
  - (d) 불법행위(자금 세탁, 탈세, 뇌물 등) 불포함 선언문

#### 핵심주의사항

- (a) 등록 신청은 **유치국 승인의 UNFCCC 홈페이지 게시 이후에 접수가능**. 단, 게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접수 필수
- (b) **크레딧 기간 개시일이 등록신청 시점 이후인 경우, 등록 신청은 크레딧 기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less than two years)!**  
ex) 크레딧 개시일: '27.01.01. → 등록 신청: '25.01.01. 이후 가능

사무국은 절차서 부록1에 따라 결정된 등록 수수료 (registration fee) 명세(statement) 또는 등록 수수료 면제 확인(confirmation)을 발급(issue) 및 이를 지정운영기구 (DOE)에 전달하고, 지정운영기구는 이를 다시 활동 참여자에게 전달

본 자료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더불어 외부배포 및 활용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00 파리협정 6.4조의 기준과 절차

사무국은 절차서 부록1에 따라 결정된 등록 수수료 (registration fee) 명세(statement) 또는 등록 수수료 면제 확인(confirmation)을 발급(issue) 및 이를 지정운영기구 (DOE)에 전달하고, 지정운영기구는 이를 다시 활동 참여자에게 전달.

활동 참여자는 등록 수수료 명세 발행(issuance)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 프로젝트 참조 번호를 인용하여 은행 이체로 납부.

- (a) 개정·철회·사용중지된 방법론 또는 방법론 툴(tool)을 적용한 경우, 개정·철회·사용중지 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 증빙 제출 또는 40일 이내에 사무국에 납부 완료(received by the secretariat) 필요
- (b) 개정·중단·만료된 표준 베이스라인을 적용한 경우, 개정·중단·만료 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 증빙 제출 또는 40일 이내에 납부 완료 필요

사무국이 1년의 납부기한 내 등록 수수료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해당 등록 신청 또는 등록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동일한 또는 다른 지정운영기구는 새로운 제출 시점에 유효한 관련 규칙 및 요건을 준수하여 언제든지 제안되었던 프로젝트의 새로운 등록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기존 사전 고려 통지는 새로운 등록 신청 시에도 유효.

## 00 파리협정 6.4조의 기준과 절차

### ② 등록 신청의 처리(Processing)

사무국은 등록 수수료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접수된 모든 등록신청목록을 UNFCCC 웹사이트에 유지하여, 각 등록 신청에 대한 스케줄 및 처리 현황을 공개.

사무국은 **월별 업무할당량(monthly quotas)** 및 감독기구의 관련 지침에 따라 등록 요청 처리 개시 일정을 결정.

사무국은 일정에 따라 등록 신청에 대한 **완전성 검토 (completeness check)**를 실시 및 **7일 이내에 검토 완료.**

#### 등록 신청의 완전성 충족 여부 판단 (편집 오류 여부, 일관성 등)

**\*이슈 발견 시, 수정 문서/정보의 제출을 지정운영기구에 요청**

- 지정운영기구는 7일 이내에 수정 문서/정보를 제출
- 미제출 시, 해당 등록 신청은 불완전(incomplete)으로 결론
- 7일 이내 수정 문서/정보 제출 불가에 대한 지정운영기구의 타당한 사유(justification) 제출 시 기한 연장

완전성 검토 종료 시, 사무국은 활동 참여자와 지정운영기구에 이를 통지.

등록 신청 제출이 완전성 검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무국은 활동 참여자와 지정 운영기구에 사유를 전달하고 UNFCCC 웹사이트에 이를 공개.

- 지정운영기구는 이슈를 해소하여 등록 신청을 재제출 가능
- **28일 이내 재제출 시, 사무국은 즉시 완전성 검토에 착수**
- **28일을 초과 시, 새로운 등록 신청 제출로 분류**

## 00 파리협정 6.4조의 기준과 절차

완성도 검토가 긍정 결론으로 시, 사무국은 감독기구의 가이드에 따라 등록 요청에 대한 **실질 검토(substantive check)**를 실시 및 21일 이내 완료.

### 실질 본질(substantive nature) 및 기본 정보의 누락 검토

\*이슈 발견 시, 수정 문서/정보의 제출을 지정운영기구에 요청

- 지정운영기구는 7일 이내에 수정 문서/정보를 제출
- 미제출 시, 해당 등록 신청은 불완전(incomplete)으로 결론
- 7일 이내 수정 문서/정보 제출 불가에 대한 지정운영기구의 타당한 사유(justification) 제출 시 기한 연장

등록 신청 제출이 실질 검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무국은 활동 참여자와 지정 운영기구에 사유를 전달하고 UNFCCC 웹사이트에 이를 공개.

- 지정운영기구는 이슈를 해소하여 등록 신청을 재제출 가능
- 재제출 관련 28일 요건은 **완전성 검토 단계와 동일**

실질 검토 결과가 긍정으로 결론 시, 사무국은 해당 등록 신청을 UNFCCC 웹사이트에 **게시(publish the request)**하고, 등록 신청은 검토(consideration)를 위해 감독기구가 접수한 것으로 간주.

완전성 검토 또는 실질 검토 단계에서의 등록 신청 재제출 시, 최초 등록 신청 제출시 적용된 방법론, tool 또는 표준 베이스라인의 버전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부정적 결론(negative conclusion)**의 최초 통지 후 90일 이내에 재제출 시에는 그대로 활용 가능.

→ 90일 이후 재제출 시에는 유효한 버전을 적용

## 00 파리협정 6.4조의 기준과 절차

사무국은 활동참여자, 유치국 및 기타 참여국의 국가승인기구 및 지정운영기구에 다음의 사항을 통지:

- 감독기구가 검토를 위해 등록 요청을 수신
- 사무국이 등록 요청을 UNFCCC 웹사이트에 게시
- 감독기구 멤버, 유치국 및 기타 참여국이 등록 신청에 대한 검토 요청(request a review)를 제기할 수 있는 마감일(the last day)

사무국은 감독기구의 가이드스에 따라 등록 신청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 신청에 대한 요약노트(summary note)를 작성하여 감독기구에 송부.

### ③ 등록 신청의 검토 요청(requesting review)

유치국 및 기타 참여국, 감독기구 멤버는 등록 신청의 게시일 (publish)로부터 **28일 이내**에 등록 신청에 대한 검토(review) 를 요청 가능(Central Europe Time, 기일의 24:00까지만 가능).

유치국 또는 기타 참여국, 감독기구 멤버가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국가승인기구는 UNFCCC 웹사이트 전용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를 제출.

사무국은 검토 요청 접수를 응답(acknowledge)하고 감독기구에 이를 즉시 통지.

검토 요청은 활동 표준, 타당성평가 및 검증 표준 또는 기타 해당되는 6.4조 메커니즘 규칙 및 요건에 근거하여 검토 요청 사유를 제시.

## 00 파리협정 6.4조의 기준과 절차

### ④ 등록 신청 검토 요청의 완결(finalizing)

사무국이 검토 요청(request for review) 미수령시, 해당 등록 신청은 감독 기구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간주.

지역 또는 하위 국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초청된 관련 이해관계자 등은 **이의 제기 및 불만사항 처리 절차**에 따라 등록 요청이 감독 기구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 날로부터 [28] [56]일 이내에 **감독 기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 가능**.

기간 내 요건을 갖춘(eligible) 이의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감독 기구는 제안된 A6.4 프로젝트를 등록 처리.

기간 내에 적격한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요건을 갖춘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제6.4조 메커니즘 이의 제기 및 불만사항 처리 절차’**에 준하여 관련 사항 처리.

등록 신청에 대한 사무국의 실질 검토(substantive check) 결과에 따라, 연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또는 순 온실가스 제거) 예상 수치가 변경되어 등록 수수료(registration fee) 과금 구간이 변동한 경우, 활동 참여자 또는 사무국은 등록 수수료의 차액을 정산.

- 과다 과금: 사무국의 등록 수수료 차액 환급
- 과소 과금: 활동참여자의 추가 등록 수수료(차액) 납부

추가 등록 수수료 납부 필요 시 사무국은 추가 등록 수수료를 수령한 이후에 프로젝트를 등록하고, 등록된 **A6.4 프로젝트의 크레딧 기간 개시일**은 유치국이 승인한 **사업계획서 상에 표기된 날**로부터 시작.

# 00 파리협정 6.4조의 기준과 절차

## 이중등록 또는 재등록

### Double or revived registration

▶ 사업자(Project Participants, PP)가 진행 중에 있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타 감축제도에 이중 등록 또는 기존 등록된 해당 프로젝트를 재등록할 경우 확인

- 활동 참여자는 제안된 A6.4 프로젝트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님을 확인(shall confirm):
  - (a) A6.4 프로젝트로 이미 등록
  - (b) 이미 등록된 A6.4 PoA에 Component project (CP)로 포함
  - (c) 6.4조 메커니즘에서 과거(previously)에 등록이 해제(deregistered)

활동 참여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확인(shall confirm):

- (a) 제안된 A6.4 프로젝트가 다른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하위 국가적 또는 부문 전체에 걸친 다른 감축제도 하에 현재 등록되거나 등록을 위해 추진 중이거나 또는 프로그램에 적용(not covered by programme) 되지 않음
- (b) 제안된 A6.4 프로젝트가 이전에 다른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또는 하위 국가적 또는 부문 단위의 온실 가스 감축 제도에 등록 또는 프로그램에 적용을** 받았으나, 해당 감축 제도 하의 크레딧 기간을 완전히 소비(consuming)하기 전에 등록이 해제(deregistered)되었거나 제외(excluded)됨
  - 활동 참여자는 **i) 해제 또는 제외 효력발생일, ii) 해제 또는 제외 시점 당시의 잔여 크레딧 기간에 대한 확인서(confirmation)를 획득 필요(shall obtain).**



## 00 파리협정 6.4조의 기준과 절차

(c) 제안된 A6.4 프로젝트는 현재 다른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하위 국가적 또는 부문 단위의 감축제도에 등록되거나 적용을 받음.

→ 활동 참여자는 i) 등록 또는 적용 효력 발생일, ii) 크레딧 기간 시작일 및 종료일, iii) 크레딧이 발행된 모니터링 기간에 대한 확인서(confirmation)를 획득 필요(shall obtain).

제안된 A6.4 프로젝트가 등록된 A6.4 PoA에서 제외된 CP인 경우, 활동 참여자는 다음을 보장(shall ensure):

(a) PDD 상에서 이 프로젝트가 **자발적 또는 오류사항 포함(erroneous inclusion)으로 인해 이전에 등록된 A6.4 PoA에서 제외된 CP였음을 투명하게 공개(declare)**

(b) 크레딧 기간 유형 (갱신 또는 고정) 및 크레딧 기간의 종료일은 제외 당시 CP에게 유효한 사항들과 동일

그리고,

(i) 크레딧 기간이 갱신형인 경우, 제외(exclusion) 시 유효한 크레딧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 신청 제출(기한 미준수 시 등록 신청 접수 불가);

(ii) 크레딧 기간이 고정형인 경우, 제외(exclusion) 시 유효한 크레딧 기간 종료일 이전에 등록 신청 제출 (기한 미준수 시 등록 신청 접수 불가)

→ 기존 크레딧 기간 유형 및 종료일을 그대로 승계!

(c) 해당 프로젝트는 A6.4 사업으로 등록요청서 제출 당시 유효한 사업의 등록을 위한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

## 00 파리협정 6.4조의 기준과 절차

(d) 프로젝트가 잠재적으로 역 배출 감축을 초래(potentially accrues negative GHG Ers) 시키는 방법론을 적용하는 경우, 배출 감축이 CP-DD(design document) 상 기술된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었고, 제외기간을 포함하여 CP를 커버 하는 가장 최근에 공개된(published) 모니터링 보고서 상의 모니터링 기간이 종료된 이후 DOE에 의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검증됨.

→ 이러한 경우 A6.4 사업으로 등록하기 전 기간에 역 배출 감축이 있었던 경우, 등록 후 최초 A6.4 ER 발행 신청분에서 해당 분을 공제

(d) 오류사항 포함(erroneous inclusion)으로 인해 CP가 제외되고 해당 CP에 대해 6.4EROI 발행된 경우, CP를 포함(inclusion)한 DOE에 의해 동일한 양의 A6.4ER을 PoA 활동 주기 절차에 따라 제6.4조 메커니즘 등록부에 보상.

## 00 파리협정 6.4조의 기준과 절차

각 용어 별 다음의 정의를 적용

- (a) 조치(measure): 연료/원료의 전환, 기술의 전환, 메탄 파괴 및 메탄 회피
- (b) 기술(technology): 재화의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에 사용 되는 설비 또는 전환 과정.  
두 기술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일한 기술로 간주:
  - (i) 동일한 종류의 output을 제공하고 동일한 종류의 장비 및 변환 프로세스를 사용;  
또는,
  - (ii) 동일 유형의 효과를 초래하는 동일한 행동 과정을 수행
- (c) 자산(asset): 개인, 법인 또는 국가가 미래의 이익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 프로젝트 장비와 같은 물리적 또는 허가 및 입법에서의 독점적 지위와 같은 비물리적(non-corporeal) 대상. 토지는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
- (d) 산출량(Output): 기술에 의해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amount)
- (e) 자원(Resource): 산출물의 생산에 필요한 공급 또는 지원의 원천. 화석연료, 공정 부산물, 바이오매스, 태양열, 풍력 및 지열 등 프로젝트/CP의 시행에 필요한 재화, 에너지 및 에너지 운반선의 범주를 포함.

## 00 파리협정 6.4조의 기준과 절차

제안된 A6.4 프로젝트가 household 내 분산 단위의 이행(implementation of distributed units)을 포함하고 상기 언급 기술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활동 참여자는 해당 프로젝트가 이전 프로젝트의 중단 또는 수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이전 프로젝트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또는 순 온실가스 제거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VVS"에 따라 다른 방식(other means)으로 평가하고 확인하도록 DOE에 요청(shall request). 이 외 모든 경우, 사업참여자는 등록 신청의 접수 전 감독기구에 확인을 요청 가능(may request clarification).

### 모니터링 보고서의 작성

#### Pre-issuance activities

- > 등록된 A6.4사업에 대하여 활동 사업자(activity Participants, PP)는 활동 표준(AS)을 기준으로 모니터링 보고서 양식(A6.4M-MR-FORM)을 활용하여 모니터링 기간별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

## 00 파리협정 6.4조의 기준과 절차

### 배출 감축 또는 제거의 검증



### Verification of emission reductions or removals

▶ 활동 사업자(activity Participants, PP)는 활동 표준(AS)을 기준으로 작성된 모니터링 보고서를 기타 증빙문서와 함께 검증 받기 위해 DOE에 제출 필요

- 활동 참여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또는 순 온실가스 제거)에 대한 검증을 받기 위해 모니터링 보고서와 기타 증빙 문서를 지정운영기구(DOE)에 제출
  - i) 해당 사업 영역(sectoral scope)을 인정 (accredited),
  - ii) 활동 참여자와 계약을 체결

활동 참여자는,

- i) 프로젝트의 등록(registration), 또는
- ii) 프로젝트 크레딧 기간 갱신(renewal of the crediting period) 이후의 초도 검증 (initial verification)을 위한 지정운영기구의 선정 시, 각각 등록 또는 크레딧 기간 갱신에 대한 타당성평가 (validation)를 수행하지 않은 기관을 선정(shall choose).

지정운영기구(DOE)는 활동 표준 및 활동 참여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검증 활동 동안 얻은 추가 정보를 바탕으로

- i) 사업의 이행, 온실가스 배출 감축 (또는 순 온실가스 제거)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산정 (calculation)을 수행,
- ii) 활동 표준 및 기타 적용 가능한 규칙 및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 및
- iii) 정해진 보고서 양식(A6.4M-VCR-FORM)을 활용하여

## 00 파리협정 6.4조의 기준과 절차

타당성평가 및 검증 표준(validation and verification standard)에 따라 **검증 및 인증 보고서(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report)**를 작성.

지정운영기구(DOE)는 모니터링보고서 상에서 다루는 전체의 **모니터링 기간에 대해 검증 및 인증을 실시.**

### 발행신청

### Issuance of Article 6.4 emission reductions

- > 지정운영기구는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다루는 모니터링 기간 동안 달성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또는 순 온실가스 제거)가 프로젝트의 이행 및 모니터링을 위한 모든 해당 요건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확인
- > 발행 요청 가능한 A6.4ER의 수량 인증 후, 관련 자료 등을 포함하여 UNFCCC 웹사이트 전용 인터페이스를 통해 발행 신청을 사무국에 제출

· 발행 신청 시 다음의 문서를 첨부:

- (a) 검증을 완료한 모니터링 보고서 및 관련(supporting) 문서
- (b) 검증 및 인증 보고서;
- (c) A6.4ERs 배분을 위한 수량 계좌 및 비율을 명시한 배분 신청서(request for distribution)

발행 신청은 각각의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다루는 **모니터링 기간을 기준으로 순차적(in chronological order)으로 제출** 및 **연속적인 두 모니터링 기간 사이에 공백은 불허.**

## 00 파리협정 6.4조의 기준과 절차

각 발행 신청은 검증 및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또는 순 온실가스 제거)이 발생한 빈티지 연도별로 표기.

크레딧 기간에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또는 순 온실가스 제거)에 대한 발행 요청은 늦어도 해당 크레딧 기간이 종료된 후 2년 이내에 제출.

**- 본 제출 기한을 놓치는 경우, 해당 크레딧 기간 동안의 A6.4ER은 더 이상 발급 불가**

### ① 발행 신청의 제출

사무국은 절차서 부록 10에 따라 결정된 발행 수수료(issuance fee) 명세(statement) 또는 발행 수수료 면제 확인 (confirmation)을 발급(issue) 및 이를 지정운영기구 (DOE)에 전달 하고, 지정운영기구는 이를 다시 활동 참여자에게 전달.

활동 참여자는 발행 수수료 명세 발급(issuance)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 프로젝트 참조 번호를 인용하여 은행 이체로 납부.

동일하거나 다른 지정운영기구(DOE)는 새로운 제출 시점에 유효한 관련 규칙 및 요건을 준수 하여 언제든지 제안되었던 프로젝트의 새로운 발행 신청 접수 가능.

→ 발행 신청과 함께 등록 후 변경(post-registration change)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관련 문서 및 정보도 함께 제출.

### ② 발행 신청의 처리

### ③ 발행 신청의 검토 요청

### ④ 발행 신청 검토 요청의 완결(finalizing)

➤ “등록 신청” 및 “등록 신청의 검토 요청” 절차  
및 일정과 유사

## 참고 수수료

구분	연간 온실가스 감축(제거/흡수량)		금액(고정)
등록 수수료 (Registration) (Project activity)	고정형: 전체 발행기간 갱신형: 1차 발행기간	1 ~ 15,000 tCO <sub>2</sub> eq	USD 1,500
		15,001 ~ 50,000 tCO <sub>2</sub> eq	USD 5,000
		50,001 tCO <sub>2</sub> eq 이상	USD 10,000
등록수수료 - PoA	PoA 건별		미정
CPA 추가(inclusion)	CPA 건별		미정
발행(issuance)	감축실적당 금액으로 납부		USD 0.15/1 A6.4ER
등록후변경(PRC)	사업 당 금액으로 납부		USD 1,500
갱신(Renewal)	등록수수료와 동일		등록수수료와 동일

- 각 신청 (등록 / 발행 / 등록 후, 변경 / 갱신) 제출 시 납부 (선금)
- 등록 단계 과정에서 연간 배출 감축량 변동에 따른 과금 구간 이동 시, 차액 '환급 또는 추가' 납부
- 발행 substantive check 단계에서 A6.4 ER 발행량 변동 시, USD 300 이상 과금 변경시 차액 환급 또는 추가 납부
- PRC에 따른 연간 배출 감축량 증가로 등록 수수료 기준 구간 상향 시, 기 납부 등록 수수료와의 차액 추가 납부
  - ex) a. 등록 시 연간 감축(흡수)량: 15,000 t CO<sub>2</sub> eq → 등록 수수료 USD 1,500 납부 완료
  - b. PRC 후, 연간 감축량: 15,200 t CO<sub>2</sub> eq로 상향
  - c. USD 1,500 (PRC 수수료) + USD 3,500 (등록비 차액: USD 5,000 - 1,500) = 총 USD 5,000 납부



# 00 파리협정 6.4조의 기준과 절차

## 사업등록 후 활동

### Post-registration activities

- ▶ 활동 사업자(activity Participants, PP)는 사업 등록 이후, 다음과 같은 주요 이슈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유지 및 보장 필요

#### 사업등록 이후 변경사항 I

##### ① 이해관계자의 지속적 참여

활동 참여자는 A6.4ER 크레딧 기간 종료시까지 지역 이해관계자가 프로젝트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 및 유지하고, 당사국, 이해관계자 및 Observer 기관 (Organization)으로 제출되는 **관련 의견을 검토(review)**.

활동 참여자는 접수 의견들에서 제기된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고, **다음 모니터링보고서에 의견들을 어떻게 처리(address) 했는지 요약 및 기술**.

##### ② 무결성 보호

활동 참가자는 등록된 A6.4 활동의 개발, 실행 및 운영에 자금 세탁, 탈세, 사기, 뇌물 및 범죄 활동을 포함한 어떠한 불법 행위도 포함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보장.

## 00 파리협정 6.4조의 기준과 절차

### 사업등록 이후 변경사항 II

#### 용량의 증가(Increasing the capacity)

배출 감축을 초래하는 용량 증설은 VVS(Validation and Verification Standard)에 정의된 중요성 평가기준치(thresholds) 구간을 적용:

- a. 500,000 톤/년 이상: 0.5%
- b. 300,000 - 500,000 톤/년 : 1%
- c. 300,000 톤/년 이하: 2%

상기 기준치를 초과하는 배출 감축을 초래하는 용량 증설은 유치국의 용량 증가에 대한 승인에 따름.

### 사업등록 이후 변경사항 III

#### 사업등록 후 변경사항에 따른 추가성(additionality)

사업등록 이후 변경사항에 따른 추가성(additionality)에 대한 영향을 평가.

### 사업등록 이후 변경사항 IV

#### 사업등록 후 타 감축제도 등록 또는 적용

프로젝트 등록 이후 다른 감축제도에 등록 또는 적용을 받는 경우, 활동 참여자는 등록 또는 적용 범위에 대하여 다른 제도로부터 확인을 확보 필요(shall obtain a confirmation).

## 참고 사업추진단계별 요건(소요기간) 준수사항

구분	기간 요건(또는 소요기간)	비고
지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a) 프로젝트사업시작일(start date of the project), 또는 (b) PDD를 타당성평가를 위해 DOE에 제출한 날 → (a) 또는 (b) 중 빠른 날 이전 완료 필요.	유치국의 관련 의견 수렴 규정 미존재 시
사전 고려 통지	프로젝트 시작일로부터 180일 이내	예외 사항 확인
글로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a) 사전 고려 통지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b) 적용 가능한 메커니즘 방법론 활용 가능일로부터 1년 이내 → (a) 또는 (b) 중 더 늦은 날까지 사무국에 PDD 접수	-
	28일 동안	-
사업등록신청	(a) 유치국 승인의 UNFCCC 홈페이지 게시 이후, 그리고 (b) 지정운영기구의 타당성평가 완료 이후	타당성평가 긍정 결론 시
	유치국 승인의 게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접수	
	(크레딧 기간 개시일이 등록신청 시점 이후인 경우) 크레딧 기 간 개시일이 2년보다 짧게 남아 있을 시 접수 가능	
등록/발급 수수료 납부	수수료 명세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예외 사항 확인

# ANNEX 2

## 국제감축사업의 국내 등록/인증 절차

---

# 00 국제감축사업의 등록/인증 총괄 절차

구분	절차	수행주체	수행내용
5-1-1	ITMOs 취득신고	사업수행자	별지 제5호 서식 '취득신고서' 제출
5-1-2	ITMOs 취득신고 접수 및 검토 국제감축등록부 등록 및 이력관리	부문별 관장기관의장	ITMOs 이상여부 검토 후, 국제감축등록부 등록 및 고유번호 부여 등 이력관리
5-2-1	ITMOs 거래신고	ITMOs 거래한자(양도/양수)	별지 제6호 서식 '거래 신고서' 제출
5-2-2	ITMOs 거래신고 접수 및 검토 양도인 보유계정 ▶ 양수인 보유계정이전	환경부장관	거래한자의 보유계정 등록 여부, 양수인과 양도인간의 ITMOs 거래 합의 성립 여부 검토, ITMOs 이전
5-3-1	ITMOs 국내외 이전 신청	사업수행자	별지 제7호 서식 '이전·사전승인신청서' 제출
5-3-2	ITMOs 이전 신청 접수 및 검토	부문별 관장기관의장(국내로 최초 이전)	6.2조 / 6.4조 별 증빙문서 검토, ITMOs 이전 심의 신청 및 ITMOs 이전 승인 여부 통보
5-3-3	ITMOs 이전 심의 신청	환경부장관(해외 이전 혹은 국내 이전)	
5-3-4	ITMOs 이전 심의	국제감축심의회	별지 제7호 서식 '이전·사전승인신청서' 제출

# 00 국제감축사업의 취득/ 이전 등 세부 절차

##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

사업자는 관장기관의 장에게 국제감축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해야한다. 사업의 일반개요와 감축실적 취득일 및 취득량을 이산화탄소상당량톤 단위로 신고해야한다.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하며, 정해진 양식을 준용해야한다.

<b>주요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및 사업자명 (취득사업자가 다수일경우 사업자별로 신청)</li> <li>· 대상국/사업등록 고유번호 / 사업등록일 등 사업정보</li> <li>· 모니터링기간/취득일/취득량 등의 감축실적 정보</li> </ul>	
<b>수행주체</b>	감축실적을 취득한 사업자 (개별사업에서 취득자가 다수일경우 배분서 첨부필요)	
<b>세부절차</b>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사업자</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전자적방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관장기관의 장</div>	<b>주의 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축실적에 대한 배분서류 제출필요</li> <li>· 신고 법정기한은 없지만 즉시 신고필요</li> <li>· 취득 신고에 따른 행정비용은 없음</li> <li>· 검증보고서 및 모니터링보고서 제반서류 첨부필요</li> <li>· 사업대표자명의로 신고</li> </ul>
<b>기한</b>	· 취득후 즉시 신고	
<b>양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지 5호서식 (신고서)</li> <li>· 감축실적배분서, 모니터링보고서, 검증보고서)</li> <li>·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li> </ul>	
<b>신청방법</b>	· 웹사이트	

본 자료는 초안이며, 세부적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외부배포 및 활용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참고 취득신고서 양식

[별지 제5호서식]

국제감축실적 취득 신고서	
사업명	
사업자명	
사업 대상국	
등록 고유번호	
사업 등록일	년 월 일
인증 유효기간	
모니터링 기간	
국제감축실적 취득일	년 월 일
국제감축실적 취득량	1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 <sub>2</sub> -eq)을 1국제감축실적(ITMO)으로 환산
<p>「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7조에 따라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사실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b>관 장 기 관 의 장 귀 하</b></p>	
<p>※ 제출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감축사업의 사업수행자 간 감축량의 배분에 대한 확인서 등 배분량 확인에 필요한 서류(다만,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감축사업 사업계획서와 사업수행자 간 감축량의 배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li> <li>사업수행자가 작성한 모니터링 보고서</li> <li>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li> </ol>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5호서식

## 00 국제감축사업의 취득/ 이전 등 세부 절차

### 국제감축실적의 취득신고접수 및 검토 그리고 이력관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신청된 감축실적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상여부를 체크하며,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시 국제감축등록부에 해당 실적을 등록하며,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그리고 이후 고유번호를 기준으로 이력 관리를 시행한다.

<b>주요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된 감축실적에 대한 이상여부 체크</li> <li>· ※ 사업일반정보 6조상의 감축실적 발행량, 사업자, 배분비율, 검증보고서, 모니터링보고서</li> <li>· 국제감축등록부에 실적등록 및 고유번호 발행과 이력관리 추진</li> </ul>	
<b>수행주체</b>	관장기관의 장	
<b>세부절차</b>		
관장기관의 장	<b>참고 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TMO에 한해서 취득신고 가능</li> <li>· Non-ITMO에 대해서 신고 불필요</li> </ul>
↓ 감축실적 검토		
국제감축등록부	<b>기한</b>	· 신고 후 관장기관에서 자체일정에 따라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축실적 등록 및 고유번호 부여</li> <li>· 감축실적의 이력관리</li> </ul>	<b>양식</b>	· 없음
	<b>신청방법</b>	· 국제감축등록부

본 자료는 초안이며, 세부적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외부배포 및 활용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00 국제감축사업의 취득/ 이전 등 세부 절차

### 국제감축실적의 거래신고

제감축실적을 거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제감축실적 거래 신고서를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반드시 정해진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제출서류를 누락없이 제출해야한다.

<b>주요내용</b>	1. 거래한 국제감축실적의 수량 및 가격 2.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국제감축실적 거래계약서 3. 그 밖에 거래 일시, 거래자 정보 등 거래 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b>수행주체</b>	사업자		
<b>세부절차</b>		<b>참고 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산화탄소 환산량 단위로 신청</li> <li>· 1tCO<sub>2</sub>eq = 1국제감축실적</li> <li>· 국제감축협약체 또는 협정 제6.4조에 따른 감독기구에서 정하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거래의사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자료로 대체가능</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사업자</div> <div style="margin-top: 20px; text-align: center;">↓</div> <div style="text-align: center;">전자적방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div> <div style="margin-top: 20px; 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환경부 장관</div>		<b>기한</b>	· 신고 즉시
		<b>양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지 6호서식</li> <li>·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 공증서류</li> <li>·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li> </ul>
		<b>신청방법</b>	· 국제감축등록부

본 자료는 초안이며, 세부적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외부배포 및 활용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참고 거래신고서 양식

[별지 제6호서식]

국제감축실적 거래 신고서				
국제감축실적 취득일 (양도자의 경우)	년 월 일			
국제감축실적 거래일	년 월 일			
거래 구분	<input type="checkbox"/> 매도	<input type="checkbox"/> 매수		
거래 수량	1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 <sub>2</sub> -eq)을 1국제감축실적(ITMO)으로 환산			
가격	총 거래가격		단가	
양도자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계정 대표자명			
	연락처	전화		E-mail
양수자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계정 대표자명			
	연락처	전화		E-mail
<p>「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제감축실적을 거래한 사실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b>관 장 기 관 의 장 귀 하</b></p>				
<p>※ 제출서류</p> <p>1. 양도인과 양수인의 국제감축실적 거래 합의 공증서류</p>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6호서식

## 00 국제감축사업의 취득/ 이전 등 세부 절차

### 국제감축실적의 거래신고 접수 및 검토 그리고 계정이전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거래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고된 국제감축실적의 수량을 양도인의 보유계정에서 양수인의 보유계정으로 이전한다.

<b>주요내용</b>	1. 보유계정을 등록한 자인지 여부 2. 양수인과 양도인 간 국제감축실적 거래의 합의 성립 여부		
<b>수행주체</b>	환경부장관		
<b>세부절차</b>		<b>참고 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부장관의 검토 및 계정이전</li> <li>· 감축실적 고유번호를 기준으로 계정간 이전</li> <li>· 감축실적 고유번호로 추적가능</li> <li>· 계약서 등의 공증서류 반드시 제출필요</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환경부장관</div> <div style="margin-top: 20px; text-align: center;">           전자적방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div> <div style="margin-top: 20p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국제감축실적 등록부</div>			
		<b>기한</b>	· 신고 즉시
		<b>양식</b>	· 별지 6호서식 ·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 공증서류 ·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b>신청방법</b>	· 국제감축등록부

본 자료는 초안이며, 세부적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외부배포 및 활용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00 국제감축사업의 취득/ 이전 등 세부 절차

## 국제감축실적의 국내외 이전

사업수행자가 감축실적을 국내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국제감축실적 이전 사전 승인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국내로 최초 이전하는 경우) 또는 환경부장관(해외로 이전하거나 최초 이전이 아닌 국내이전의 경우)에게 제출

<b>주요내용</b>	1. 협정 제6.2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문서 - 유치국가의 국제감축실적 이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 동의 확인 문서 - 유치국가의 상응조정 실시 약속서 등 상응조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2. 협정 제6.4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의 경우 협정 - 제6.4조에 따른 감독기구로부터 발행된 국제감축실적 보유 현황 및 소유권 증빙 서류
<b>수행주체</b>	관장기관의 장 / 환경부 장관



본 자료는 초안이며, 세부적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외부배포 및 활용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참고 감축실적 승인 신청서 양식

[별지 제7호서식]

국제감축실적 이전 사전승인 신청서			
구분	<input type="checkbox"/> 최초 국내 이전	<input type="checkbox"/> 해외 이전	<input type="checkbox"/> 최초 이전이 아닌 국내 이전
사업명			
사업자명			
사업 대상국			
등록 고유번호			
사업 등록일	년 월 일		
인증 유효기간			
모니터링 기간			
국제감축실적 취득일	년 월 일		
국제감축실적 취득량	1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 <sub>2</sub> -eq)을 1국제감축실적(ITMO)으로 환산		
국제감축실적 이전량	1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 <sub>2</sub> -eq)을 1국제감축실적(ITMO)으로 환산		
국제감축실적 이전 목적	<input type="checkbox"/> 중장기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	<input type="checkbox"/> 상쇄배출권으로 전환 활용	
	<input type="checkbox"/> 국제적 감축목표(CORSIA)	<input type="checkbox"/> 기타 목적(사유 : )	
<p>「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국제감축실적을 이전하기 위해 사전승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b>관 장 기 관 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 귀하</b></p>			
<p>※ 제출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감축사업 시행지 국가의 국제감축실적 이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 동의 확인 문서</li> <li>협정 제6.4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한 경우 협정 제6.4조에 따라 발행된 국제감축실적 보유 현황 및 소유권 증명에 관한 서류</li> <li>국제감축사업 시행지 국가의 상용조정 실시 협약서 등 상용조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li> </ol>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 00 국제감축사업의 취득/ 이전 등 세부 절차

## 국제감축실적의 국내외 이전

사업수행자가 감축실적을 국내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국제감축실적 이전 사전 승인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국내로 최초 이전하는 경우) 또는 환경부장관(해외로 이전하거나 최초 이전이 아닌 국내이전의 경우)에게 제출

<b>주요내용</b>	1. 협정 제6.2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문서 - 유치국가의 국제감축실적 이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 동의 확인 문서 - 유치국가의 상응조정 실시 약속서 등 상응조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2. 협정 제6.4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의 경우 협정 - 제6.4조에 따른 감독기구로부터 발행된 국제감축실적 보유 현황 및 소유권 증빙 서류
<b>수행주체</b>	관장기관의 장 / 환경부 장관 / 국제감축심의회



본 자료는 초안이며, 세부적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외부배포 및 활용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00 국제감축사업의 취득/ 이전 등 세부 절차

## 국제감축실적의 처분

정부보유계정으로 이전된 감축실적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되어지며, 사용실적은 국제감축실적 등록부의 처분계정으로 이전된다. 환경부장관은 처분된 실적에 대해서 이력관리를 추진한다.

<b>주요내용</b>	환경부장관은 국제감축심의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중 정부보유 계정으로 이전된 국제감축실적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다. 국가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되는 국제감축실적은 정부보유계정에서 처분계정으로 이전되며, 환경부장관은 처분된 국제감축실적에 대해 이력 관리를 하여야 한다.
-------------	--

<b>수행주체</b>	환경부 장관		
<b>세부절차</b>	<b>참고 사항</b>	· ITMO만을 대상으로 함 · 정부계정의 감축실적으로 한함 · 타목적의 사용에 대해서는 명시없음	
UN 상응하는 조정	<b>기한</b>	· 상응조정목적의 활용 이후	
↑ ② 국가감축목표활용	<b>양식</b>	· 없음	
환경부장관 (정부계정의 감축실적)	<b>계정</b>	· 보유계정에서 처분계정으로 이전	
↓ ① 처분요청      ③ 처분계정이전			
국제감축등록부			

본 자료는 초안이며, 세부적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외부배포 및 활용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